

2019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제1차

- ◆ 일시 : 2019. 1. 31.(목) 14:00 ~ 16:55
-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9층 회의실
- ◆ 참석자 (10명)
 - 위원장 : 000
 - 위 원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배석자 : 000 팀장, 000 주무관
- ◆ 회의안건 (5건)
 -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심의(3)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심의(1)
 - 보고 (1)

(개회 - 14시 00분)

○ 000 위원장

20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팀장

먼저 오늘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총 5건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의자료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심의 3건인데 충무공 신경진 묘역 신도비 비각 건립공사, 전주이씨 광평대군파 묘역 보호각 단청공사, 평창동 보현산신각 공적비 설치입니다.

두 번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심의가 1건으로 석파정 별당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건설사업 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고 1건으로 승동교회 기본정비계획 용역 중간보고 건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설계자가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량구청 문화관광과 000**

중량구청 000 주무관입니다.

저희는 총익공 신경진 묘역 신도비 비각 건립 관련해서 시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5월 31일부터 설계를 시작했고요, 2018년에 6차 심의와 9차 심의를 두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두 차례 모두 다 심의결과 보류 통보를 받아서 세 번째 신청인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사무소 측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 **사업관계자**

안녕하십니까, 과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경 1차 심의회 결과 보류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설계(안)에서 좀 더 여러 가지(안)을 제시하도록 결과를 받았고요. 두 번째 심의에서는 지반 레벨조정과 함께 구조를 경량목구조로 해서 주변 정비계획을 계획(안)을 제시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심의 결과문을 받고 고민스러웠던 게 벽체가 없는 보호각을 경량목구조로해서 이거를 보완을 하라는 의견에는 사실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중목구조와 경량목구조에 대한 두 가지(안)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전체영역을 위치도 상에서 봤을 때 신도비가 있는 부분에서 가장 높은 대지, 신경진 묘역 바닥면을 제로로 봤을 때 끝자락이 플러스 5m이상 그리고 마지막 시 우수맨홀로 빠져나가는 마지막 부분이 약 마이너스 7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반 레벨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일단 현재 우수라인이 이렇게 지표수 들이 이쪽으로 흘러서 트렌시를 통해서 이쪽으로 물길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신도비 주변으로 쇄석자갈을 깔아서 지붕부에서 물길이 쏟아지는 것을 함께 받아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대지가 좀 낮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대한 인적 대지와 의 레벨차이는 약, 한 단이나 두 단 정도의 석축 설치는 불가피해 보이고 그거는 뒷면에서 일단 비각 주변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대지가 현재는 콘크리트로 메워지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을 저희가 잔디 블록으로 해서 한 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반레벨조사를 한 결과로는 상단 현황레벨처럼 신도비가 약 700이상 많이 다운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의 결과와 같이 받았을 때 저희가 고민스러웠던 것은 끝자락에 있는 마이너스 700 맨홀 상부가 가장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배를 다시 계획을 해보니 현재 신도비 주변으로 감아 도는 레벨이 신도비 바닥면 보다는 낮아졌을 때 이 끝에 여기는 이쪽 맨홀이 인접해 있는 이 레벨이 마이너스 700이고, 여기 앞에 있는 트랜시 부분이 마이너스 400정도 되거든요. 여기보다 낮아졌을 때는 오히려 진입부보다 낮아지는 역구배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가지 않는 한에서 이쪽 신도비 바닥면하고 기단 바깥 위치와 같은 레벨로 봤을 때 구배가 형성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레벨조사로 봤을 때는 현재 저희가 이 계획 경사도를 잡았을 때는 맨홀로 우수라인도 직접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크게 우리가 되지 않게 공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보여 지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더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 6월 달에 심의 받았던 내용이 현재 평, 단면 입면을 보여드린 거고요, 변경 1(안), 2(안) 당초에는 지붕모양에 대해서는 맞배나 그다음에 팔작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한번 다시 계획안을 해보자는 의견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변경 1(안), 2(안)으로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현장의 특성상 현재 이쪽에 있는 게 인접대지 문화재보호구역경계입니다. 이 경계 때문에 저희가 픽스돼 있는 신도비 바닥면과 그다음에 신도비 귀부 부분 상단이 건물을 세우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GL이 떨어지는데 위에 귀부는 좀 더 저희가 계획한 (안)에서는 계속 '답답해 보인다' 혹은 GL 부분이 너무 솟아있어서 하부가 환기나 이런 유지관리부분에서 좀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많이 고민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처마에 끝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과정을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번에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안)은 사실은 입면상에 봤을 때는 6.9m에 6.9m 가로 세로가 같은 정방형 건물에서 입면상 봤을 때는 한옥구조에서는 많이 불안해보일 수는 있겠지만 상부를 좀 더 경량화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설계안에서 목부재들을 구조용집성재로 해서 중목구조로 해서 오늘 보여 드린 건데요. 상부 귀부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벽체가 없는 벽식 구조에서, 현재 우리 현장에는 기둥이나 굳이 벽체

가 없더라도 기둥이나 기초부분이 좀 더 지진이나 바람, 비바람에 대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봐서도 중목구조로 또 어떤 형태가 나올까 해서 제가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두 번째로 저희가 받아든 보류 내용이 경량목구조로 해서 또 한 번 지시를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량목구조로 해서 기둥배열은 역시 6.9m, 6.9m로 해서 넓은 영역을 확보를 하고, 현재 이런 도면(안)으로 해서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전문 업체도 그렇고 일단은 여러 가지 법조항을 봐도 2×4나 2×6, 2×8 등 아무리 큰 걸로 하더라도 이런 외부로 나타나는 면처리나 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량목구조로 구조를 하라는 의견이 제가 오늘 이런 (안)을 보여 드린 것으로 이게 다 충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량목구조와 전통한식목구조 혹은 중목구조. 기존, 제가 보여 드린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지난번에 경량목구조로 하라고 나갔어요?

○ 사업관계자

네, 저기 의견... 내용문은 그렇게 와서 저희는 벽체가 없는 상태인데, 좀 많이 고민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다음에 저기 조각상하고 건물 도면하고 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게...

○ 사업관계자

평면상 축이라는 게 여기 지금 지대석에 중심이 잡히거든요. 지대석을 중심으로 저희가 건물을 엮은 거거든요.

○ 000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90도로 이쪽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 사업관계자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 000 위원장

예, 그 단면은.

○ 사업관계자

단면은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종단으로.

○ 000 위원장

아, 그렇게 자른 거예요?

○ 사업관계자

네, 이거는 이제 경량목구조로 했을 때.

○ 000 위원장

첫 번째 거.

○ 사업관계자

이게 이제 구조용집성재로 해서 건교부 고시 중량 구조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내진부분이나 상부에 대한 **로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대량을 조금 더, 전통한식목구조일 때 300 이상의 폭이 필요했거든요. 그게 해결이 되고 상부, 우리 한식목구조 같은 경우는 대들보가 평으로 가게 되거나 혹은 약간의 곡재를 이용한다 해도 우리 신도비의 귀부 부분이 한 자 이상이 물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제시했던 중목구조 안에서는 그게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6.9m 스팬도 구조용집성재로 했을 때는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3개 (안)이 있는 거네, 그렇죠?

○ 사업관계자

총으로 했을 때는 맞습니다. 전통한식목구조에 대한 것과 이런 중목구조에 대한 것과 경량목구조로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진을 보여드리면 보여 지는 느낌이 이런 거거든요. 유물전시관이나 지정문화재가 아닌 곳에서도 우리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런 필로티 부분이나 이런 것도 저희 구조가 딱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 이게 지금 8m가 넘는 스팬이거든요. 이런 것도 구조적으로 저희가 다 계산을 해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아치가 되면 바깥으로 밀어요, 끝에서, 그런데 저거는 끝에 어떻게 보면 겹쳐마 같이 있어서 눌러주는데 이거는 거기서 딱 끝나서 약간 벌어질 텐데?

○ 사업관계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의를 했고요.

○ 000 위원

상의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

○ 사업관계자

아니, 구조부에서 검토를 해달라고는 했는데 보가 결구가 돼서 밖으로 뺄목처럼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철물 결합으로 인해서 바로 떨어진다는 것.

○ 000 위원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치가 되면 벌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바깥으로 그래서 추가 되고 여기 눌러주는 게 없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좀 이력도 되고 그래서 시스템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단칸짜리에는.

○ 000 위원

비, 보호각에다가 집성목은 정서상으로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 000 위원장

그렇죠.

○ 000 위원

제안사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이게 좋겠다고 제안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 사업관계자

저희가 그전에 한옥에 대한 것으로 여러 가지 지붕 형태를 제외하고 처음에 6월 달 변경 1(안), 2(안). 10월 달 받았던 이 (안)들에도 보류사항이 됐고 경량목구조로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 000 위원

그냥 recommend 하라는 거고 must로 가라고 한 건 아닌데. 꼭 하라고 한 건 아닌데.

○ 사업관계자

결과문이, 저도 심의 받을 때는 교수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상부를 좀 더 경량화 해라. 그런데 결과문이 구조는 경량목구조로 하며 이 문구가 와서 조금...

○ 000 위원

그게 이 비석이 그렇게 왕릉에 있는 비석만큼 대단한 것이 아닌데, 처음에 설계해 오신 것들이 왕릉보다 비각들이 더 과장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경량목구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그 비각이 정말 비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만 하는 걸로 단순화 해 와라 그런 뜻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시한 건 아니고 다른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 사업관계자

저도 심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첫 번째 6월 안에서 변경 1(안), 2(안). 10월 달 넘어가면서 저도 이제 익공 부분이나 처마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붕 모양에 대한 것도 불가피하지만 이 귀퉁이로 제안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맞배며, 팔작이며 모든 걸 다 했지만 두 번째 심의결과문에서 조금은 저희가 못 보여드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중목구조와 경량목구조를 한 번 보여드린 겁니다.

○ 000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이렇게 좋겠다. 라고 제안하시는 그
게 어떤 건지.

○ 사업관계자

경량목구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중목구조가 낫지 않은가.

○ 000 위원

이 계획안 인가요?

○ 사업관계자

벽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통한식에 대해서도 별 코멘트가 없으시고 해
서 이렇게 준비를 해본 겁니다.

○ 000 위원

이거를 제안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추는 이걸로?

○ 사업관계자

네, 이것과 경량목구조를 함께 보여드린 겁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경량목구조는 조금 힘들겠다는 의견이시고 그러면 보호각 괄호 1
(안)이라고 하는 이거를 오늘 저희한테 제안을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 사업관계자

네.

○ 000 위원

이거죠? 집성목 해서.

○ 000 위원

집성목으로?

○ 사업관계자

네, 구조용 집성목으로 해서...

○ 000 위원

전에는 중간에 기둥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한 칸, 한 칸으로.

○ 사업관계자

네, 가능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공사비용은 얼마만큼 세이브가 됩니까?

○ 사업관계자

크게 세이브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000 위원장

없어요?

○ 사업관계자

네, 비슷합니다.

○ 000 위원장

없으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치 형태와 한옥하고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들보가 가고 비가 조금 올라오는 것도 사이로 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천정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 사업관계자

제가 그래서 그때 보여드렸던 게 보와 보가 지나가는 사이에 저희 비신 귀부가 이 보에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보게 되면 시야에 가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둥배열을 했던 거고 정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앞쪽에 중간에 두게 되면 신도비에 대해서 정면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둥배열을 해서 보여드렸던 거고 그래서 저

는 경량화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가 직접 발표할 당시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상부에 대한 저희가 전통한식목구조로 했을 때 가장 경량화 할 수 있는 게 상부 보토나 강회다짐에 대한 물매조정을 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결과문은 그것과 다른 내용이라서...

○ 000 위원

그게 경량화라고 하는 게, 처음에 1안을 하셨을 때 이게 작은 6.9m의 기둥이 4개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둥이 대단히 굵은 기둥으로 정상적인 건물과 같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비를 보존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건물 그래서 최소한에 덧씌우는 집의 형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본격적인 건물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보이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게 기둥이 4개가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스팬을 줄여서 하나씩만 해도 가벼워 보일 텐데 그 작은 데에 4개가 기둥이 들어가니까 3칸이나 되니까 이게 좀 너무 둔탁해보이고 작은 비보다는 오히려 건물이 튀어버리니까 그거를 좀 가볍게 해보자는 그런 취지죠.

○ 사업관계자

그런데 6월 심의 때 제가 분명히 브리핑을 했으니까 그 내용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도 이 뒤쪽으로 비신 중앙으로 보가 건너지를 수 없는 6.9m를 극복하기 위한 기둥에 보를 받쳐야 하니까요. 정면에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둔탁해 보이는 두께라고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각주로 해서 맞배 건물로 해서 보여 드렸는데 어쨌거나 저도 과정 중에서 자꾸 경량화하고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그런 보호각을 하자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순차적으로 보면 변경(안) 1이라고 한 가운데 것이 9월 달 것인가요?

○ 사업관계자

네, 10월에 왔습니다.

○ 000 위원

그다음에 변경(안) 2가 맨 오른쪽 것이...

○ 사업관계자

같이 왔었습니다.

○ 000 위원

같이 했었나요? 10월에?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건가요? 이번에 이것을 제시하신 거고. 그런데 중간에 제가 위원회를 두어 번 결석을 해서 그 사이에 흐름을 모르긴 하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세 번, 네 번을 다뤄야 하는지 의아스럽고요.

경량화하라고 하는 것이 아까 000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왕릉도 아니고 비석을 보호하자고 하는 각인데 너무 둔중하고 무겁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가볍게 해보자는 그 의지가 아마 직원 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서 용어가 경량구조라는 용어를 쓰시고 이렇게 해서...

○ 000 위원

아니요, 그 의견이 언급은 됐었습니다.

○ 사업관계자

네,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고요.

○ 000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비중이 실린 것으로 전달이 돼서 도중에 확인을 하시던지 했으면 서로 오해가 없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측면, 정면에서 봤을 때 처음에 한쪽 면들을 기둥을 4개를 넣었던 것이 한 쪽은 하나를 속아내서 스판이 길어졌고 그런데 다른 보호각들도 보면 저 정도 사이즈면 그냥 네 귀퉁이에 기둥을 4개를 세우고 위에다 지붕 올리는 것으로 간결하게 갈 수 있는 해법들이 많은데 오늘 제안하신 것 보니까 결국에는 재료는 바뀌었지만 기둥 4개가 모서리에 가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거네요.

○ 000 위원

중목구조.

○ 사업관계자

중목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육성으로 했을 때는 어렵다는...

○ 000 위원

어려워요.

○ 사업관계자

네, 적어도 두 칸은 쪼개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3.6m만 돼도 도리가 쳐지 거든요. 더군다나 여기는 벽체가 없다 보니까 텅 비어 버리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보면서 계속 단면에 있는 저 비석하고 이게 안 맞잖아. 밑에 입면, 단면이 축이 안 맞잖아요, 지금. 자꾸 헛갈려요. 그렇죠?

○ 000 위원

저걸 갖다가 옆으로 돌려서,

○ 000 위원장

그러니까 비석이 정면으로 봐야 단면하게 맞는 거고 입면은 또 맞고, 이게...

○ 사업관계자

아, 종단을 잘라드려야 건물에 대한 구조가 보이니까 제가 저 한 단...

○ 000 위원장

그러면 전시물이 이리 가야지, 비석이 저 방향이 아니잖아. 비석이 정면으로 딱 보여야 하는데 측면이 보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헛갈린다고. 모르겠어요?

○ 사업관계자

예, 이해합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저 평면도를 옆으로 돌려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 000 위원

레벨도 내려오고 맞배로 해보라고 그러죠, 뭐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뒤에 해온 게 굉장히 좀 더 이상해보여요, 여러 가지 제안이 없는 데.

○ 000 위원장

그리고 공사비가 거의 같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 000 위원

비슷해요. 하여튼 취지는 너무 지붕이 낮아서 뭐랄까 신도비가 낮춰 보인다는 뜻이고 아시겠지만 저게 좀 너무... 아까 했던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해온 거 조금 성의껏 보완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 000 위원장

2번.

○ 000 위원

변경(안) 2로?

○ 000 위원

오른쪽, 맞배로.

○ 000 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안) 2 같은 경우에는 탑신이 많이 가려져서 관람객이 앞으로 많이 들어와야 탑신 꼭대기가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 000 위원

원래 그래요, 원래 이게 다 그렇게 생겼어요.

- 000 위원
원래 당초 심의 (안)에 보면 탐신이 많이 노출이 되어있는... 탐신 윗부분이 거의 지금 조명까지 가있잖아요.
- 000 위원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니까.
- 000 위원
그래서 지금 저 비각을 차라리 조금 많이 축소시켜버리면 어때요, 면적 자체를?
- 사업관계자
네, 이 빨간 라인이 현재 우리 신도비 주변에 설치돼 있는 콘크리트 울타리 라인이고, 이 면을 줄이고자 하니 위에 있는 통풍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넓은 면적을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에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구조물과 연계되어 있어요?
- 사업관계자
네.
- 000 위원
그것도 그런 게 있구나. 저거를 더 확 줄여버리면 한 칸, 한 칸 좌우로 한 칸 이렇게 될 텐데.
- 사업관계자
이 신도비가 과거에는 브리핑을 했었는데, 신도비 사이즈가 3구각이 4.5에 높이가 4m고 탐골공원에 있는 대원각사비가 2.5에 4m에 5.2m입니다. 그러니까 대원각사비에 준한다고 보시면 되는 사이즈라서 너무 왜소하게 됐을 때는 또 너무 갑갑하게 같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최초 심의 때 말씀 있으셨거든요.

○ 000 위원

없어요, 대안이. 해 오신 거 두 개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너무 날림이나 가건물 같고.

○ 000 위원

이게 전시관도 아니고 보호각인데, 집성목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상부구조를 최고로 단순화해서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 000 위원

저게 기둥이 많이 못 올라가는 거죠.

○ 사업관계자

그렇죠.

○ 000 위원

조금 더. 그게 한계가...

○ 사업관계자

기둥.

○ 000 위원

기둥.

○ 사업관계자

네, 두 번째 안으로 주신다면, 내용이 정리가 된다면 이 보 부분이나 후리기를 해서 약간 쳐올린다던지 그 형태가 된다면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 000 위원

그래도 땅 깎는 게 어디예요. 맨 처음에 폭 빠져서, 웅덩이가...

○ 사업관계자

이 상단까지는, 사실은 900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현재 신도비 바닥면에
서.

○ 000 위원

이게 원래 바닥이에요? 지금 저기 신도비가? 주변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
죠?

○ 사업관계자

네, 신도비 바닥은 절대 안 만지는...

○ 000 위원

지금 어떤 안으로? 기존에 있던 (안)이든, 새로 해 오신 (안)이든 비용차
이는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사업관계자

경량목구조는...

○ 000 위원

그거 빼놓고는. 비슷한 거죠?

○ 사업관계자

네, 그거 빼고는 비슷합니다.

○ 000 위원

나머지는 저희끼리 상의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 000 주무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10월, 회의 때 정확히 경량목구조를 하라고 했었나요?

○ 000 위원

했던 멘트가 있었다잖아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안 오신 교수님이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그랬는데 그것도 너무 serious하게 하셔서 해보니까, 여기 예제 보니까 분위기가 좀 안 맞고. 저는요. 뭐 좋죠. 스펠도 6 점 몇 m 하려면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저게 칸 수가 저렇게 줄기 어려운데, 그래서 아마 저희 쪽에서 스터디를 한 것 같아요.

○ 000 위원

지금 현황 중에서 굳이 고르라고 하면 처음에 했던 당초 심의한 6월 28 일 (안)이 제일 나올 것 같은데.

○ 000 위원

근데 거기서 많이 발전된 게 레벨을 많이 낮췄어요. 주변에 있는 지변.

○ 000 위원

지형을.

○ 000 위원

그러니까 지형은 지금 바뀐 것으로 하고.

○ 000 위원

모양이 사모지붕이 낮다는 거죠? 맞배지붕보다?

○ 000 위원

예, 그리고 중간에 기둥들을 빼니까 너무 목구조상으로 무거워 보이고 경 관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 000 위원

당초(안)이나 변경(안)이나 그쪽에서 정해서.

○ 000 위원

하라고 해야지, 이거를 또 하라고 하는 것은 좀.

○ 000 위원

지형만 낮추고.

○ 000 위원

예, 지형은 조정을 하고 구조는 저게 가장.

○ 000 위원

28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 000 위원

아, 안돼요?

○ 000 위원

뭐한거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 000 위원

맞배가 변경 2(안)인가요?

○ 000 위원장

변경 2(안)이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은데.

○ 000 위원

원래 심의에서 본안으로 갈 수는 없는 건가?

○ 000 위원

그런데 저는 변경2(안)이 자꾸 저어스러웠던 게 탐신 부분이 너무 종도리에 딱 붙어있어서. 그래서 좀 저어스러웠던 거죠. 저는 당초 심의안 6월 28일 (안)이 괜찮다고 하는 게 탐신이 그래도 아래쪽에 있는데 너무 탐신이 위에 붙어 있어서 너무 가려서.

○ 000 위원

변경(안) 2로 하면서 좀 보를 올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 000 위원

그런데 맞배로 해서는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모가 낮지 않나 했는데 뭐...

○ 000 위원

명지대학에 계신 분이 말씀하셔서.

○ 000 위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 000 위원

모양은 사모가 좋죠, 맞배 보다는.

○ 000 위원

보는 시각 때문에 그랬어요.

○ 000 위원

이게 비석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맞배가 괜찮은데, 이거는 비석이 한 개이기 때문에.

○ 000 위원

그런데 못 돌아간다고 하시니까.

○ 000 위원

그런데 지형 같은 거는 조정이 되니까.

○ 000 주무관

그러면 변경(안) 2(안)으로 가는...

○ 000 위원

아니, 지금 결정 안 했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선생님들은

지붕모양이 처음에 했던 게 낮다고 하니까. 이게 피심사자가 갖고 있는 짜증나잖아요, 왔다 갔다.

○ 000 위원

짜증도 짜증인데, 대외적으로 보는 불신임 같은 것도 저어스러워요.

○ 000 위원

2(안)을 좀 어떻게 개선을 하죠.

○ 000 위원장

아니, 2(안)을 기준으로 하되 1(안) 같은 경우는 익공 식으로 해서 보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2(안)을 앞에 것처럼 보를 올리면 거의 같은 높이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2(안)은 그냥 돌이 되어 있는데 1(안)은 익공 식으로 해서 올렸으니까 밑에 보를 1(안)처럼 해서 하면.

○ 000 위원

그만큼,

○ 000 위원

탑신높이를 조금 확보하는 방안으로.

○ 000 위원

그 파트만큼, 주두 높이만큼 높이자.

○ 000 위원장

그러면 지붕은 맞배가 나올 것 같은데, 모임이 아니고. 2(안)처럼.

○ 000 위원

저도 그게 나는데.

○ 000 위원장

그런데 평면이 장방형인데.

- 000 위원
정방형이에요.
- 000 위원
정방형입니다.
- 000 위원
장방형 아니에요. 정방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모를 얘기한 거예요. 저게 도면이 좀 찌그러지게 나와서 그렇지, 6.9에 6.9입니다. 정방형이에요. 그러니까 정방형에 맞배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 안 그려져 가지고…
- 000 위원
맞배로 하면 이상해요.
- 000 위원장
아, 정방형이면 뭐.
- 000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되게 정치적으로 복잡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도 있고 전에 하신 교수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 000 위원
아니, 지형이. 주변이 많이 정리가 됐으니까. 지형을 낮추고.
- 000 위원
2(안)으로 하되 높이를 높이는 것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지금 이거를 사모지붕으로 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더 간단해서 좋아 보이는데, 저는.
- 000 위원장
기둥 4개만으로 구조가 안 된다는 거죠.
- 000 위원

그러기엔 경관이 너무 큰 거죠, 6,900이 너무 커서. 더구나 도리 길이가 나왔을 때 목재가 하중이 힘들어서.

○ 000 위원

두 배 나왔어, 관보니까. 그냥. 관이 줄어들고 두 배.

○ 000 위원

정방형이 맞배로 하면 이상해지는 것 아니에요?

○ 000 위원

이상할 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 000 위원

아닌데? 그래도 정면이 약간이라도 길어야 되는 거지, 배치를 다시 하든지 해야지.

○ 000 위원

아니면 평면설계를 변경 2(안)에 맞춰서 다시 조정을 해오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 000 위원

그런데 저는, 저분들 더 괴롭히면 좀 곤란할까봐, 오늘 이렇게 해서 손을 떼게 해줘야지.

○ 000 위원

답을 줘야 돼.

○ 000 위원장

그럼요, 2(안)으로 하되 이 정면 폭을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이게 여유가 많은데. 그래서 맞배로 하면.

○ 000 위원

그래요.

○ 000 위원

그래도 되지, 6.몇 m 이쪽.

○ 000 위원

그러니까 당초 심의(안)을 보면 한 변이 6m인데 그다음에 6.6으로 됐다가 변경 2에서는 6.9로...

○ 000 위원

근데, 평면을 줄이면 저기 현재 기둥이 4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 빼야 돼요. 지금 6900이라서 기둥이 또 들어갔는데 그러면 중간에 기둥이 없어져야 돼요.

○ 000 위원장

이쪽 4개는 빼버리고.

○ 000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 000 위원장

스판이 줄어드니까 4개를 빼더라도 구조가 되면 그게 낫지 않아요?

○ 000 위원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면에 기둥을 하나 빼고 측면에 조금.

○ 000 위원

정면에 기둥 2개를 빼는 거죠. 2개를 빼고 맞배로 해서.

○ 000 위원장

폭을 좀 줄이고.

○ 000 위원

폭을 줄이고 맞배로 해서, 기둥을 한 줄 더 받으면 되니까.

- 000 위원장
이게, 이렇게 하고 이걸 빼고 이걸 기등을 2개로 넣고. 이게.
- 000 위원
보, 고칠 때 이렇게 고친다는.
- 000 위원
아까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해온 (안)처럼 되는 거예요. 그거를 2(안)처럼 되는 건데 이게 집성목이 아니고 저 구조형식으로.
- 000 위원
전통구조형식으로 가는 거죠.
- 000 위원
전통구조형식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스파를 줄여주고.
- 000 위원
그래서 아예 저희가 의견이 되면 들어오시라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그 (안)을 아예 왜곡 없이 전달해주세요.
- 000 위원
맞배로 하면 정면이 어떻게 할 거야.
- 000 위원
이 상황으로 가는데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 000 위원
앞에 풍판을 달아야 되겠죠. 앞뒤로.
- 000 위원
위원장님이 나중에 자문하는 걸로 하고.

○ 000 위원

그런데 6월 28일에는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논지는 그게 아니었던거든요. 이게 너무 과설계가 돼서 왕릉처럼 설계가 육중하게 됐으니 그거를 좀 간소하게 해라라는 걸로 갔는데 경량목구조라고 명확히 10월 달에 왔다니까 제가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 000 위원

멘트가 나왔다잖아요. 들으셨다잖아요.

○ 000 위원

그러니까 경량목구조를 해라는 아닐 것 같고, 제 생각에 경량목구조를 포함하여. 줄이는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나가지 않았을까요?

○ 000 위원장

생각해봐라. 그렇게.

○ 000 위원

현대식 디자인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의미.

○ 000 위원

아이디어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 000 위원

현대식 조화 잘해왔어요.

○ 000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 이분들이 너무 하기 싫었다라는 게 느껴져, 도면이 그래, 이런데도 할래? 이런 의미로 해온 거야, 지금 이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 했어. 화나셨나?

○ 000 위원

위원장님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시는 걸로.

- 000 위원장
이거는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통과로.
- 000 주무관
지금 조금 멀리 가셔서.
- 000 위원장
그다음 거.
- 000 주무관
그다음 분, 하고. 그다음에.
- 000 위원장
이거는 조건부로 통과로.
- 000 위원
위원장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정리하시죠.
- 사업관계자
발표하겠습니다. 광평대군 묘역 정비설계 보수공사 재심사유가 있는데요. 재심사유가 저번 달 했을 때 단청문양공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실시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단청전문가에게 단청을 어떻게 했는지 의견을 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단청전문가
이번 비각을 실시하면서 비각이 왕릉 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왕실 내 묘역에 있는 비각으로써 다른 네 군데 사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광릉비각이나, 장릉비각, 서능비각, 탕평비각 다들 공통적으로 보자면 단청에서도 궁궐단청과 사찰단청의 특징이 나누어지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역시 비각단청 역시 왕릉 내에 있는 것들은 궁궐단청의 양식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문양의 내용도 연하면서도 장단을 쓰지 않고 육색연하로 주 문양, 단청문양을 넣었고 그리고 휘에서도 첫 번째 휘는 보통 장단 휘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장단이 아니라 육색으

로 맞춰서 궁궐의 단청양식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보통 늘휘나 인휘로 많이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건물도 작았지만 다른 광평대군 일원에 있는 다른 기타 건물들에는 다 주화머리초에 주화반머리초의 늘휘가 많이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각 단청은 오랜만에 새로 하고 규모도 있고, 비각의 중요성도 살리고자 하는 면에서 어떤 삼색인휘 색대를 옥색과 삼청과 석간주 3색의 인휘대로 구성을 해보았고 머리초문양도 도리장여 부재에는 3m 정도밖에 안 되는 부재이지만 옥색 주화 머리초로 해서 주 문양을 좀 더 비중 있게 살려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중이 많은 부재가 연목이었습니다. 연목에서는 주화로 넣기에는 너무 연목이 가늘어서 반주화 머리초 옥색 주화초로 해서 그리고 휘는 삼색으로 인휘 대를 구성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목 낮쪽에는 보통 주화 머리초를 해도 연목 낮쪽에는 대부분 연화로 여섯 겹의 연화머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 문양에 있는 주화와 달리 낮쪽에는 연화머리초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반자가 중앙에 두 개의 직사각형 부재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게 조금 더 길어지면서 다른 곳 같으면 정사각형이 네 개가 나올 사이즈였지만 여기서는 길쭉하게 두 개가 나와 있어서 유일하게 내부에는 문양을 줄 만한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두 개가 있는 반자에는 주화와 연화로 해서 좀 화려하게 그리고 길쭉한 면을 장식하기 위해서는 당초로 이렇게 장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서와 첨차에서는 일반적인 양식처럼 당초 문양을 부재에 공간에 맞게끔 예쁘게 당초를 틀어서 시문을 하였고 그리고 도리낮쪽과 추녀낮쪽 외부에서 보았을 때 크게 보이는 면이 이 도리와 추녀낮쪽이었는데요. 일반적인 태평화에서도 조금 더 둥글둥글하면서도 단아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태평화로 시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매기 주두는 일반적인 나머지 부재에서는 극기단청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주두나 초매기에서는 이런 정도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문을 서울시 단청장 선생님이신 000 선생님께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제가 문양모사에서 사용했던 녹색 양녹의 색감이 너무 차분하다해서 시공할 때 그것만 조금 더 밝은 톤으로 해줬으면 하셨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 000 위원

질문 있는데요, 잘 몰라서. 재료 같은 것에 대한 내구성은 어떻게 되나
요? 보통 단청하시는 분들.

○ 단청전문가

지금 저희가 보통 석채가 아닌 일반 화학 안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것들은 거의 30년 정도.

○ 000 위원

30년?

○ 단청전문가

네, 네. 그리고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데 습기가 많은 산중, 산사 같은 곳은 15년 정도. 반 정도 줍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작업하실 때, 대기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있습니까? 봄이면 어떻고.

○ 단청전문가

가장 좋은 것은 봄, 가을이 가장 좋고요. 겨울철에도 얼지만 얇으면 되거
든요. 영하권으로 떨어지지만 얇으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 000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돈 문제인데 어떤 단위
로 예산을 저기 합니까, 칸이나 면적이냐.

○ 단청전문가

보통 면적에 따라서 그리고 단청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시방서에 올라와
있는 품수가 있거든요, 기능공마다. 그래서 수리기술자가 한 명이 들어가
고 보조화원이 한 명이 들어가고 했을 때 그 단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정도가 되면 모로단청이면서 굉장히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품수가 몇 품을 잡느냐, 기술자 몇 품. 품이라는 게 1위를 1품
으로 잡거든요. 기술자와 밑에 조력자에 날짜 수를 가지고 품수를 계산을
합니다.

○ 000 위원

그다음에 목재 건조나 그런 것을 봐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목재 수분량에 따라서 적절한 작업 저기가 있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시작할 때.

○ 단청전문가

시공 이후에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적절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목재의 수분 함수율이 적정하다고 나와 있는 퍼센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수분 함율이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건조율이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 000 위원

네, 알겠습니다.

○ 000 위원

이런 거는 그냥 비각이니까 분량이 작으니까 1년 기획해도 큰 건물은 그래도 2~3년 지나야 되는 거죠.

○ 000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광평대군이면 능수준이 아닐뿐더러 묘수준인데 단청을 왜 왕릉기준으로 받으셨어요?

○ 단청전문가

왜냐하면 지금.

○ 000 위원

묘수준이면 훨씬 더 생략이 되어야 할 텐데.

○ 단청전문가

그런데 지금 비각 같은 경우는 일반 지방에도 대군의 묘라든가 장군의 비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정도 내려갔을 때 오히려 단청등급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등급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능 안에 있는 비각들이 좀 지켜지고 있는 편이었거든요.

○ 000 위원

능은 제일 높은 거잖아요. 비각 중에 제일 높은 건데 이거는 원도 아니고 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능 수준으로 했는지, 전문가 자문을 누구로 받은 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여기 보수내용에 보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 단청전문가

000 선생님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동안 많은 능의 비각도 시공을 하셨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더 간소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극기단청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극기는 묘사체라든가...

○ 000 위원

모로니까 좀 평범하다는 그런 뜻이죠.

○ 단청전문가

모로에서도 조금 더 낮은 사양이 있고, 조금 더 잘할 수도 있고 한데, 모로 이상으로 더 낮추기가.

○ 000 위원

통상적으로 등급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단청전문가

네, 지금 이정도면 가장. 간단한. 극기단청이 아닌 이상은 가장 간단한 편입니다.

○ 000 위원

예, 고맙습니다.

○ 단청전문가

감사합니다.

○ 000 위원장

이거 정리를 해야죠.

○ 000 위원

어떤 문양을 할 것이냐에 대한 안이 없이 그냥 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 000 위원

선례가 안 나와서. 디자인이 안 나와서.

○ 000 위원

잠깐만요, 앞에 것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첫 번째 것. 총익공 이 비각을 000 위원님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맞배지붕은 정면이 이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측면이 돼버리고 정면이 험각 부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을 건지, 마지막 확인을 하고 싶은데.

○ 000 위원

이상할 것 같은데.

○ 000 위원

안 되지.

○ 000 위원

맞배지붕은 정면이 이수가 딱 보여야 될 텐데.

○ 000 위원

그렇지 맞배가 측면이 되는 거지 누가 봐도. 그런데 정면이 돼버리면 모양이.

○ 000 위원

이상하다니까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원안으로 돌리기가 좀 그런 상황인거죠. 원안으로 돌리고 싶으나, 되도록 원안과 다르기를 원하나.

○ 000 위원

보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틀면 될 것 같은데.

○ 000 위원

보 방향을 좀 바꿔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 000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기를 줄였기 때문에 이거를 모임으로 만들 때 그거를 바꿔서 해달라고 할 수밖에.

○ 000 위원장

그 지붕이 맞배가 아닌 걸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000 위원

맞배로 하면 그런 좌측...

○ 000 위원

맞배로 하게 되면 당연한 정면이 측면처럼 보이는.

○ 000 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보죠.

○ 000 위원장

그런 사례가 없나요?

○ 000 위원

못 봤어요, 아무래도 측면은 측면이지 그게. 맞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설계자하고 의논해보고, 일단 두 번째 거는 원안.

○ 000 위원

이거는 그런데 000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 과장된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광평대군 묘역 이거를 그대로 가는 거는 다시 능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보다 더 간단해져야죠.

○ 000 위원장

단청, 지금 단청이야기죠?

○ 000 위원

예, 예.

○ 000 위원

건물이 너무 작은데.

○ 000 위원장

좀 화려하긴 화려해요.

○ 000 위원

그 밑으로는 극기밖에 없는데, 극기는 최고 약한 거 아니에요.

○ 000 위원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사례조사를 하고 능에 준한 것으로 사례조사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왕족이니까 같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좀 갭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000 위원

후손들은 항상 왕 수준으로 하기를 원하니까. 원래는 묘면 비각을 안 하는 게 맞는데.

○ 000 위원

이게 또 왕손이잖아.

○ 000 위원

왕손이 뭐 한두 명이에요, 지금? 다 그거 지금 해 주면 뭐.

○ 000 위원

그러니까 묘 수준의 사례조사를 가지고 거기에서 샘플을 추출하던지 했어야 하는데.

○ 000 위원

그런데 아까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묘 수준에 있는 것을 사례조사를 해도 다 화려하게 했을 거예요. 다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 000 위원

서울시도 단청장이 의견을 줬는데 하라고.

○ 000 위원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 000 위원

너무 과해도, 저기해. 후대에 쓸데없는데 예산도 쓰고 잘못 오해도 되고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안 해도 될 것을 만드는 거니까.

○ 000 위원

그러니까 현황이 과잉된 것들이 현재 현실이라 하더라도 저희 위원회를 거쳐서 2번이나 뭐를 다뤘다고 하면 000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선을 그어서 그건 넘지 않도록 하는 제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청을 제가 잘 몰라서.

○ 000 위원

단청은 위원장님 전공.

○ 000 위원장

이걸 줄이면 예를 들면 휘를 삼인데 이 휘로 한다든지, 나는 반자 이게

굉장히 화려한 것 같아. 이 비각에 이렇게 반자를. 이런 거를 간단하게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 000 위원

반자 할 필요가 있나. 그냥.

○ 000 위원장

단청은 해야지요.

○ 000 위원

반자 해야 돼요?

○ 000 위원

목재 보호차원도 있고.

○ 000 위원

건물은 칠한 거야, 단청만 하는 거니까, 건물은 칠한 거예요. 지금.

○ 000 위원

반자가 있는 모양이죠, 지금. 반자가 있기에 그러겠지요.

○ 000 위원장

단청 비용이 3,400만 원이니까 조그마한 평수로 한두 평 되나요? 밖에 안 되는 게.

○ 000 위원

1.52평, 그래도 2,890만 원을 넘겠다는 거예요.

○ 000 위원

많은데, 과한데요?

○ 000 위원

과한 거예요.

○ 000 위원

이거는 인건비라서 단청을 시작하면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 000 위원

그래도 기계로 다 매야 하고.

○ 000 위원

격식에 관한 문제지 이게 약하게 한다고 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 000 위원

어쨌든 가급적 간략하게 하라?

○ 000 위원

쉽지가 않을 텐데.

○ 000 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조건부로 통과를 할까요. 아니면 재심을 해서.

○ 000 위원

재심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 000 위원

향후에 이런 비슷한 것이 있을 때 내부에서 단청공사에 대한 레벨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이드라인을. 그렇죠? 서울 시내에 여러 문화재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몇 단계 나눠서. 사실 이거는 가이드가 없으니까 분석해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또 격도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건 내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저렇게 해 갖고.

○ 000 위원

그러면 조건부, 묘의 수준에 간략하게 할까요.

○ 000 위원

원래 묘에는 비각을 안 하게 되어 있으니까 후대에 조사하는 거면 몽땅 다 화려하게 나올 것이 뻔하니까.

○ 000 위원

그니까요. 저분들도 뭘 해올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

○ 000 위원

원래 묘에는 안 하는 게 정식인데, 이제 이것 보호하려고 후손들이 능 수준으로 다 화려하게.

○ 000 위원

묘가 몇 개가 있어요? 저기도 있고 뭐. 사육신묘도 있고 이쪽에 방배동에 뭐도 있고 많아요, 여기.

○ 000 위원

세종대왕 다섯째 아들인 게 중요한 거겠죠.

○ 000 위원장

그러면 조건부 해서 제가 단청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했는데 하도 오래돼서. 다시 공부를 해서 이 비각에 대한 단청의 수준을 하여튼 제안을 할게요. 조건부로 해서.

○ 000 위원

둘 다 조건부로, 둘 다 위원장님 괜찮으세요?

○ 000 위원

제시한 문양보다 간략하게 정리할 것 그렇게 하죠, 뭐.

○ 000 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확인을 받도록.

○ 000 위원

위원장님 확인받도록, 단청.

○ 000 위원

그러니까 묘 수준에 있는 보호각의 문양으로 간소화하는 조건을 달고 그 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000 위원장님의 확인과 지도를 받을 것.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하시죠.

○ 000 팀장

1번 들어오라고 해도 될까요?

○ 000 위원장

예.

○ 000 위원

직접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 000 위원

제일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좀 제가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생각하고 안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사실 1차 때는 자리에 있었고 2차 때는 자리에 없었어요. 1차 때, 제가 여태껏 서울시 문화재. 현재 비각되어 있는 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비하고 지붕 사이가 너무 좁아서 물이 떨어져서 비가 오하려 보호각을 세운데서 보호각에서 보호가 안 되고 오하려 보호각이 비의 상태를 헤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저는 사실 보호각을 새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는 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왔을 때 굉장히 지반보다 꺼져있고, 과설계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변경 현재 있는 것만 보자면 변경 1(안)과 변경 2(안)이 있는데 변경 1(안) 보다는 2(안)으로 하는 게 좀 구조는 간단하게 풀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면을 폭을 세 칸이 아니라 정면 한 칸, 측면 세 칸으로 하게 되면 구조에 문제가 없고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정면과 측면이 맞배지붕이 긴 직사각형 모양이 정면이 되어야 한다는 게 오히려 측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저쪽이 장변이 돼버리니

까.

○ 사업관계자

보가 가로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 000 위원

네,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이거를 죄송하지만 뒤에 온 사람이 느닷없이 앞에 것 앞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량목구조를 만약에 제외하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현재 해법을 해나가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설계자의 의견은.

○ 사업관계자

저희가 지금까지 1년여 동안, 10개월 동안 고민한 바로는 현재 정면성을 보고서도 많은 기둥배열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보 방향 이든 뭐든. 그리고 상부 보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실 신도비를 바라보는 게 귀부에 있는 문양을 보려고 다 보지는 않잖아요. 귀부에 대한 문양은 앞, 배면에서도 다 보입니다. 현재로써는 라인으로 그였기 때문에 다 가려지는 것 같지만. 제가 설계자입장에서 봤을 때 변경 1(안), 2(안)에 대한 기둥배열은...

○ 000 위원

당초 심의(안)까지 고려하여. 레벨이 다운 됐으니까 당초 심의(안)의 사모 지붕이 다른 (안)이라고 치고, A, B, C (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모 지붕, 팔작지붕, 맞배지붕.

○ 사업관계자

했을 때는 가장 간단한, 어떻게 잘못 배열하면 맞배가 좀 더 무게감 있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둥 결구부나 이런 양식을 좀 더 다운 시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맞배지붕에서 저 정도 배열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 000 위원

사모지붕까지 고려를 해도요?

○ 사업관계자

네.

○ 000 위원장

정면이 맞배지붕일 때 괜찮아요?

○ 000 위원

기둥도 저대로 두고.

○ 000 위원

그러니까 세 칸짜리를 한다는 거죠? 지금 설계자 입장에서는. 세 칸, 두 칸으로.

○ 000 위원장

아, 정면이 세 칸이고.

○ 000 위원

그림이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 사업관계자

현재 있는 그 울타리는 저희...

○ 000 위원

아니, 아니. 이게 종이에서 보면 정방형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훌쩍하게 보여서 계속 뭔가 혼란이 일어나서.

○ 사업관계자

비율이 좀 다르죠.

○ 000 위원장

그러면 지붕하고 저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저 단면에서 보면 비석

은 90도로 틀어야 되는 거죠. 단면도에서는.

○ 사업관계자

교수님 이쪽으로 잘라서 봤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제가 지붕구조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자른 면을 단면구조로 보여 드리려고 잘라드린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되죠. 비신이 돌아가는.

○ 000 위원장

돌아가야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정면이 합각 부분이 되잖아요. 물려있는 지붕이 아니고. 그거 관계없어요?

○ 000 위원

비가 쳐다보는 방향이 합각부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소리지요.

○ 사업관계자

아, 아닙니다. 여기가 정면입니다. 여기 지금 히든 선으로 표현돼 있는 이 형태가 보이는 겁니다.

○ 000 위원

세 칸, 두 칸, 원래 설계자가 그려온 도면대로 하자면 맞배지붕 저게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둥 한 줄씩 빼고 정면 한 칸, 측면 두 칸이면 사실 이게 돌아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 000 위원장

그러면 규모 축소하지 말고 2(안)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 000 위원

2(안) 그대로 하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심의(안)에서 기둥을 봉 쪽으로 조금. 보를 올리는 그런 수고로움을...

○ 000 위원장

저거는 익공 식이잖아요?

○ 사업관계자

네.

○ 000 위원장

저거, 포가. 이거는.

○ 사업관계자

네, 겹쳐마입니다. 저기는. 처음에 저희가 설계했던...

○ 000 위원장

예, 여기는 그냥 도리라고 돼 있잖아요.

○ 사업관계자

네, 밑도리입니다.

○ 000 위원장

대들보 있고 그 포를 익공 식으로 하면 좀 올라갈 것 아니에요.

○ 사업관계자

네.

○ 000 위원

그러면 올라가지요.

○ 000 위원장

그거는 괜찮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 사업관계자

네.

○ 000 위원장

비용은 별 차이 없죠?

- 000 위원
3.2m에서 3.4m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 사업관계자
기둥높이를 말씀하시는 거, 결구구만 올리는 거죠, 결구구만. 도리까지.
- 000 위원
올리면 비신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 사업관계자
그나마 지금보다는 150정도는 더 올라갑니다.
- 000 위원
150이요?
- 사업관계자
네.
- 000 위원장
그러면 2(안)에 기둥 위 부분만 1(안)처럼 하는 걸로 하죠. 스판 옮기고
줄이고 할 필요 없이.
- 000 위원
그래요. 아휴. 참 어렵다.
- 사업관계자
감사합니다.
- 종로구청 000 주무관
금번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평창동 주민들 성금을 모아 한 8,000만 원 가량 되어 서울시 현
상변경 심의를 받아서 보현산신각에 대해서 수리를 진행을 하고 기존에

철제 팬스로 되어있던 문을 일각문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금 모았던 동네 주민들이 안내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는 공적비로 표현을 했고요. 그걸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안내판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경미 건으로 인해서 자치구에서 처리를 해야 되나 이거 같은 경우는 문화재 안내판으로 보다가 새로운 공적비를 신설하는 건이다 보니 서울시 현상변경 심의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치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역이 현재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전체적으로 잡혀있는 지역이고, 현재는 보호구역 바깥에 도로변상에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리를 했고 일각문을 신설을 했고 돌각담 바깥에 안내판 공적비를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확대배치도입니다.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STS 제작설치라고 해서 이게 그렇게 고급스러운 재질을 아닌 것으로 해서 기존에 이런 팬스가 있던 것을 주민들 성금모아서 바깥에 일각문을 세웠다 그리고 평창동 보현산신각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들어가지만 이것에 대해서...

○ 000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 문화재 관련해서 표지판 통일이 없어요?

○ 종로구청 000 주무관

통일안 있습니다. 통일안이 있고요, 현재도 도로변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통일안대로 하면 되는데, 왜 또 이걸 해?

○ 종로구청 000 주무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보면.

○ 000 위원

공적비를 세운다는 거 아니야.

○ 000 위원

아휴.

- 종로구청 000 주무관
이거를 8월 달에 주민들 성금 모아서 수리를 했다보니 여기 모금하신 분들 이름을 넣고 싶다.
- 000 위원
현대판 공적비구나.
- 000 위원
안내판이 아니라니까.
- 종로구청 000 주무관
안내판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 000 위원
더 설명 필요 없어요.
- 000 위원장
제목을 뭐라 되어 있어요? 판 제목을?
- 종로구청 000 주무관
그냥 평창동 보현산신각으로 해 놓고요.
- 000 위원장
했는데 밑에는.
- 종로구청 000 주무관
이제 간략적인 설명만 들어가고, 이게 지금 수리하신 분들이 지금 제사도 지내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지금 시주라고 표현하는 것만, 여기 돈 내신 분들 이름 해서 설치하는...
- 000 위원

전통적으로는 얼마씩 낸다고 쓰는데. 누구 1,000만 원 이런 거.

- 종로구청 000 주무관
그 내용까지는 안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
재료가 STS.
- 000 위원
스테인리스 스틸인가봐요.
- 000 위원
우리나라 콩글리쉬. STS. 난 방탄소년단인줄 알았어.
- 000 위원장
이걸 문화재 하는 안내판, 기존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달리 해야 될.
- 000 위원
안내판이 아니라니까요.
- 000 위원장
글쎄, 아닌데.
- 000 위원
안내판을 두 개 써도 안 되죠. 공적비. 이걸 정비하는 데 돈 낸 분 이름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예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오석에다가 해서 비석을 세웠을 텐데, 현대판으로.
- 000 위원
차라리 조그맣게 하면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경관을 진짜 돌 같은 바닥

에 조그맣게 하면 모를까.

○ 종로구청 000 주무관

사실 이거를 8월 달에, 현상변경 올릴 때 주민들 돈 모았다고 그러기에, 제가 이걸 나중에 또 해달라고 그러면 안된다라고 사실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돈 모았다고 만들어라.

○ 000 위원

구청입장에서는 어때요?

○ 종로구청 000 주무관

저희는 이제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시는 거로 저희는 따를 텐데요.

○ 000 위원장

안내판에 뒷면에다가 하면 안 되나, 뒷면에다. 그러면 보이지는 않겠지만.

○ 000 위원

거기에 조그맣게 쓰고, 구청장님이 감사패 하나씩 주면 될 텐데.

○ 종로구청 000 주무관

1월 달에 저희 구청장님은 신년인사회를 다 다니세요, 동마다. 그런데 이때도 그분들이 열댓 분들이 일어나서 발언을 하셨거든요. 구청장님께서 어쨌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따르겠다고.

○ 000 위원

구청장님이 건축가 출신 아니에요?

○ 종로구청 000 주무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시겠다고 말씀하셔서.

○ 000 위원

안내판 설치라고 하는 게 지금 공적비인 거죠.

- 000 위원
기존 안내판 어디에 있어요?
- 종로구청 000 주무관
기존 안내판은 여기 지금 도로가 표현이 안 됐는데요. 바깥에 있습니다.
- 000 위원
어디쯤 있어요, 여기서 볼 때.
- 종로구청 000 주무관
여기 밑에 있습니다. 더 밑에.
- 000 위원
지금 이 위치에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안내판이 저 밑에 있어요?
- 종로구청 000 주무관
안내판이 바깥에 있는 게 지금 평창동 보현산신각이 좀 도로에서 내려서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 000 위원
저 안내판이 밑에 없으면 저기 있는지를 몰라요. 위치가. 저 밑에 있어야 돼요. 저기는.
- 000 위원
야, 진짜 선례가 없을 것 같아. 이거는.
- 000 위원
이게 당사자들이야 공명심도 있고 좋은데 저게 공공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이드를 잘해야 하는데.
- 000 위원
일단 이거를 안 해주면 주민들도. 그래서 이거를 눈에 안 띄게 좀 작게

하고 목표가 이 분들 성함이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면 이 안에 있는 안내판 잠깐 보여주세요. 이미지도 Before&After 꼭 저렇게 넣어야 할지는 모르겠고 저 안에 문구도 너무 많고, 저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 작게 하고 높이도 낮게해서 눈에 많이 안 띄게.

○ 000 위원

이거를 세우지 말고 바닥에 이만한 검은색 돌을 담장 바깥에 거기다가 세워놓으면 된다는 거죠.

○ 000 위원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이게 지금 1,500이에요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많이 줄이고. 하여튼 목표는 저분들 이름 새겨지는 게 목표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작게 해오는 안을 생각해주시면, 너무 커요.

○ 000 위원

기왓장에 몰래 적고.

○ 000 위원

그거는 또 싫어하지.

○ 000 위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 000 위원

이게 지금 담장 높이가 얼마예요? 저기 복원 후에 담장 높이가 얼마예요?

○ 종로구청 000 주무관

담장 높이가, 제가 대략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데 1,000이 조금.

○ 000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안내판이 1,500이면 담장보다 더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보다 낮아야 될 것 같고요.

○ 000 위원

그다음에 저기 프린팅 한 게 오래 못가지 않아요? 아무리 스테인리스 스틸에 저거해서 이렇게 해도.

○ 종로구청 000 주무관

이게 벗겨질 겁니다, 아마.

○ 000 위원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음각으로 하든지 뭘 해서 조금 더 들여서 차분하게 만들던지 컬러로 할 때는 맨 처음에 노인네들이면 살아 계실 때 괜찮지만. 5년 후면 다 벗겨진다고.

○ 000 위원

사진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 종로구청 000 주무관

아니면 요즘 표석 설치할 때 그런 컴팩트하게.

○ 000 위원

그러니까 담장하고도 같은 석재로 해서 작게 하시는 것.

○ 000 위원

그러면 영혼이 남아 있는다. 그렇게 해서.

○ 000 위원

영혼 안 남아요.

○ 000 위원

표석으로 하면.

○ 000 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 000 위원

땅에다가 이름 해서.

○ 000 위원

바닥에다 표석처럼.

○ 000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의견 개진했을 때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의견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조금 작았으면 좋겠으니까.

○ 종로구청 000 주무관

네, 말씀해주신 내용 충분히 주민들에게 잘 설득을 해서 다시 한 번 재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 000 위원장

이거는 부결이죠? 부결.

○ 000 위원

부결이죠, 뭐.

○ 역사문화환경연구소 000

금일 심의안건은 강남구 삼성역과 경기도 파주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노선 건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첨부서류로 큰 A3가 있는데 그 양이 방대해서 조금 망게 발표자료로 따로 작업을 해냈습니다. 이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GTX-A노선은 서울 삼성역을 출발하여 서울역, 연신내, 대곡역을 거쳐 킨텍스 그리고 파주 운정역까지 연장 42km 구간을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통과해서 서울시 문화재의 서울시정문화재를 총 7개 요소를 지금 지하도로 통과하게 됩니다. 우선 석파정 별당을 비롯한 석파정, 홍지문, 탕춘대성, 반계 윤응렬 별장, 홍종문 가옥,

서울광장, 태평로2가 지하배수호가 총 7개의 문화재를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대심도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각 문화재 별로 통과구간과 지질분포현황, 종단면도 그리고 초음진동, 지하수의 영향분석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홍지문 및 탕춘대성입니다. GTX-A노선은 탕춘대성을 지표면 아래 약 60에서 최대 180m지점에서 북서 남동 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암반상태는 양호한 경암층을 통과하고 있고, 지하수위는 지표면 아래에서 약 10~20m 깊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종단면도를 통해서 현재의 시설물과 GTX-A노선 관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탕춘대성 밑으로는 홍지문터널 그다음에 북악배수터널이 지표면 아래 약 120m지점에서 통과를 하고 있고 GTX는 홍지문터널로부터 약 60m를 내려와서 밑으로 통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중 구조물 안정성 검토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터널굴착에 의한 탕춘대성에 발생하는 최대 침하량은 저희가 허용기준은 25mm, 부등침하량은 20mm 각 변위 500분의 1로 허용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 기준을 비교해볼 때 탕춘대성의 최대 침하량은 0.24, 부등침하는 0.35 최대각변위는 6만 3,000으로 확인되어서 터널굴착에 따른 영향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결국에는 지하 40m, 지하 60m를 통과하다보니 큰 영향은 지상부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중 발파진동 영향분석입니다. 문화재에서 가장 엄격한 허용기준이라고 하는 0.2 카인을 기준으로 할 때 탕춘대성 하부통과구간에서는 0.2보다도 한참 아래인 0.081로 확인되어서 터널 굴착에 의한 발파진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중 열차진동에 의한 영향분석인데 이것 또한 0.2 카인을 기준으로 하면 0.01 정도의 기준으로 확인이 되어서 진동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려하시는 것이 지하수 영향분석인데 지하수 강하량은 터널굴착 완료시 최대 0.29m로 예측이 돼서 재해사고 개연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석파정 별당입니다. 석파정 별당은 문화재 주변으로 GTX-A노선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표면 아래 약 180m 본선에서 외부로 유사시에 나갈 수 있는 대피터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방재구난지역이라고 하는데 방재구난지역이 지하에서 개설되어서 지상으로 나가는 곳

이 되겠습니다. 먼저 허용기준을 보시면 2017년도 허용기준이 고시가 되었는데 먼저 노란색 부분이 보존구역 개별심의구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임야, 전면, 도로는 심의구역 그리고 3구역은 지금 저희가 방재 구난지역을 잡은 좌측과 우측에 기개발지는 3구역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구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3구역은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단서조항으로 문화재 보존 별표2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표 2라 하면 7.5m 높이에서 양각 27도 이내 선에 건축행위라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재구난지역은 7.5m 높이에서 양각 27도를 적용하면 최소 15m, 뒤에는 32m까지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재구난지역의 위치는 2007년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초반만 해도 석파정 별당이 북측에 있고요, 남쪽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비오톱과 자연녹지지역을 피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조치결과로써 현재 석파정 별당 좌측 허용기준이 3구역인 타법령에 따른 구역인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방재구난지역에는 환기구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환기구 구조물의 높이는 최대 10m 그리고 자연사면은 향후에 녹화하고 조경계획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질분포대입니다. 지상으로 나오다보니 이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어서 정기비전탐사 결과를 실시하였고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암반상태, 암반등급별로 적정굴착공법을 적용해서 지상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중 안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석파정 별당의 최대 침하량은 0.045 채 1도 안 되는 수치로 확인이 되고요. 부등침하량도 0.006 각변위는 72만 1,000분의 1로 확인이 되어서 터널굴착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중 발파진동에 대한 영향분석도 가장 엄격한 0.2를 기준으로 하면 0.04로 확인이 되어서 발파진동에 대한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중 열차 진동에 의한 영향분석 또한 0.2를 기준으로 하면 0.001 카인 정도로 진동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최대 강하량은 0.26m로 예측되어서 재해사고 개연성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석파정입니다. 석파정은 GTX-A노선이 지표면 아래 약 140m~180m 남동 북서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암반상태는 양호한 경암층을 통과하고 있고 지하수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10~30m 깊이에 형

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단면도를 통해서 현재 탕춘대성 밑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탕춘대성과 동일합니다. 석파정이 일부 겹치다보니 홍지문터널과 북악배수터널이 지표면 아래 120m에 위치하고 있고 GTX-A노선은 홍지문터널로부터 60m를 내려오는 지점에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공사중 구조물 안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석파정의 최대 침하량은 0.003, 부등침하량은 0.002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터널굴착에 의한 영향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중 발파진동 영향분석 또한 0.2카인을 기준으로 하면 0.02로 확인되어서 발파진동에 의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운영중 열차진동분석 또한 0.2카인을 기준으로 하면 0.01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강하량도 최대 0.28로 예측되어 재해사고 개연성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계 윤웅렬 별장입니다.

GTX-A노선 지표면 아래 약 115m에서 130m 지점에서 동남 서북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지표면 아래 약 12m 깊이에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GTX-A노선은 그 아래로 115m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단면도를 통해서 시설계획을 보면 기존 시설물은 없고 신규시설계획도 없습니다. 공사중 구조물 안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최대 침하량은 0.365 부등침하량 0.037 각변위는 32만 5,000분의 1로 확인되어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계굴착 TBM 공법을 적용하는 구간인데요, TBM 진동허용기준이 0.2를 기준으로 하면 진동은 0.01 이하로 확인이 되어서 진동 기준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운영중 열차진동영향분석 또한 0.2 카인을 기준으로 하면 0.01로 굉장히 낮은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하수위는 최대 0.26으로 확인되어 재해사고 개연성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부동 홍종문 가옥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한 30m 지점 동쪽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동쪽으로 30m 입역된 지점에서 지표면 아래 약 70m에서 동남서북방향으로 통과합니다. 지하수는 지표면 아래 약 10m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설계획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중 구조물 안정성 검토결과는 최대 침하량은 25를 기준으로 할 때 0.104, 부등침하는 0.023 각변위는 51만 5,000분의 1로 확인이 되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TBM 진동허용기준

또한 0.2를 기준으로 할 때 0.07로 확인되어서 진동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운영중 열차진동영향분석 또한 0.2를 기준으로 할 때 0.02로 확인되어 진동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하수위 또한 최대 0.25m의 지하수의 강하량으로 예측되어 재해사고 개연성은 미미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광장 지하배수로입니다. GTX-A노선은 지표면 아래 약60m에서 남북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좌측이 덕수궁이고요, 지하수는 지표면 아래 10m, GTX-A노선은 약 60m에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하배수로 구간에서는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시정역이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A노선은 시정역으로부터 30m를 더 내려와서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사중 구조물 안정성검토결과입니다. 25가 기준일 때 0.102 부등침하량은 0.003 각변위는 46만 7,000분의 1로 확인되어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TBM 진동허용 기준 또한 0.2를 기준으로 0.01로 확인되어있습니다. 운영중 열차진동영향분석 또한 0.2를 기준으로 할 때 0.02 굉장히 미미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영향분석 또한 최대 0.24m로 예측되어서 재해사고 개연성은 미미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태평로 2가 지하배수로입니다. GTX-A노선은 지표면 아래 약 60m에서 남북단으로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위는 지표면 아래 약 10~20m로 형성되어 있고 GTX-A노선은 지표면 아래 60m에서 통과를 합니다.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시정역에 위치하고 있고 시정역 아래 약 30m지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 구조물 안전성 검토결과 최대 침하량 25를 기준으로 할 때 0.254 부등침하량 0.01 각변위는 12만 9,000분의 1로 확인되었습니다. TBM 진동허용기준 또한 0.018로 확인되었습니다. 열차진동 영향분석 또한 0.2를 기준으로 할 때 0.03으로 확인되어 진동기준은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하수위는 최대 0.24m로 예측되어 재해사고 개연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7개 문화재를 설명을 드렸고 이것에 대한 영향저감대책을 정밀계측계획과 이상 징후 발견시에 대처프로세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상시 계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에 따른 변화에 따른 지반안정성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BM공

법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TBM 헤드 상부에 변위센서를 착용해서 지반침하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별로 계측계획을 문화재 유형별 특성과 입지특성을 고려해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밀계측에 대한 계측관리 기준 초과시에는 현장관리감독 기관에 통보하고 서울시 문화재 부서를 포함한 관계기관 전문가 합동작업을 통해서 신속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전에 비상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

공사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 투입도 그래서 오픈 컷이나 입구는 어디다 설치하게 되나요? 중간에 똑 똑 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냥 두더지처럼 안 가고.

○ 사업관계자

저희는 전구간이 다 배실도 터널로 계획이 돼 있고 중간에 승강장이 아닌 대합실부분은 오픈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대체로 어디쯤 돼요? 오픈으로 들어가는 데가.

○ 사업관계자

각 정거장, 운정정거장, 킨텍스정거장, 대곡정거장, 연신내정거장. 서울역 정거장 전부다 개착 포션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해놨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트럭이나 장비 반입하려면.

○ 사업관계자

그거는 저희가 개심도로 지나가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환기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중간 중간에 환기구를 설치해서 수직구 형태로 설치를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공사할 수 있게끔 환기구는 한 1.5km마다 설치가 되

어 있거든요. 총 24개 정도 설치가 돼서 그 4개소를 다 공사차량이 진입해서 나오게끔 계획을 해놨습니다.

○ 000 위원

지금 말씀하시면 오렌지 빛깔로 되어 있는 역들을 오픈컷을. 역이 지금 있잖아요, 있는 역들 아닌가?

○ 사업관계자

환승개념으로, 지금 있고.

○ 000 위원

있는 데다 밑에 더 뚫어서 환승하는데 거기를 오픈컷을 위주로 하고 그러면 역하고 역 사이는 오픈되는 데는 없어요?

○ 사업관계자

없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색깔이 초콜릿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국보, 국가지정인 것 같은데, 그렇죠?

○ 사업관계자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거기는 또 문화재청 가서 또 협의를 하나요?

○ 사업관계자

1월 9일에 사적분과 심의를 받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오늘 보여드렸던 소음진동 지하수위 영향검토 결과가 저희 사적분과 할 때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해달라고 해서 보완을 해서 월요일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연습하신 것을 보완을 해서 여기서 시지정만 또 따로 하시는 거군요.

○ 사업관계자

네,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라인 안에 국보 있고 시지정 있고 막 섞여있는데.

○ 000 위원

송례문은 저기로 왔어요, 문화재위원회.

○ 000 위원

문화재로 하셨어요? 서울역은 또 다른 분과에서 할 거고 이거는 좀 총합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000 위원

발표하는 분도, 준비하는 분도 힘들고 그런데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 사업 하는 거라 급하기는 한데 이게 조금 약간 스케이트 되어 있어서 어렵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지 같이 합동해서 잘 대처를 해야 하는데.

○ 000 위원

25쪽 방재구난지역 좀 보여주세요. 저런 구조물이 추후에 들어간다는 얘 기인가요? 석파정 옆에?

○ 사업관계자

네.

○ 000 위원

그런데 저것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 절토를 하고 추후에 성토 를 하겠다는 뜻인 거죠?

○ 사업관계자

네, 절토는 지금 저희가 환기구 구조물을 지반조사를 한 결과 연경암층으로 지금 조사가 됐고 그래서 주변 환경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앵커 및 사면보강을 한 이후에 공사를 하고 환기구가 설치되면서 2층 건물이 들어섭니다.

○ 000 위원

2층 건물이요? 밑에는 필로티처럼 되어 있고.

○ 사업관계자

한쪽은 필로티고, 한 3분의 1은 필로티고 비어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철도 기술기준에 의거해서 방재구난지역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 000 위원

아, 저기가 방재구난지역이라는 데고 위가 다 환기구.

○ 사업관계자

네.

○ 000 위원

그리고 저기 보이는 데가 어느 쪽이에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 사업관계자

이쪽을 바라보는.

○ 000 위원

석파정이 어디 있어요?

○ 사업관계자

석파정 별당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 000 위원

별당이, 위치가.

- 000 위원
별당은 저기 있고.
- 사업관계자
현재 이 자리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 000 위원
거기가 신설 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빨간 데가 별당.
- 사업관계자
네, 별당, 그리고 보호구역.
- 000 위원
너무 가깝다.
- 000 위원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요, 방재구난지역이라는 게 높이 뭐 가로 세로.
- 사업관계자
높이는 10m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조경계획이랑 다 해서 전부다 최대한 덮여지게 됩니다.
- 000 위원
가로, 세로는 얼마나 되나요?
- 사업관계자
한 4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래서 이게 절토양이, 이게 10m면 한 20m 이상 절토를 하는 것 같은데.
- 사업관계자

지금 저희가 절토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지금 경암으로. 저기 현장을 가보시더라도 노출 암들이 되어 있는 암반 산으로 보여 지고 그래서 저희가 급한 경사로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절토양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저게 전부다 산을 날리는 게 아니고.

○ 000 위원

안정각이 급하다 이거야.

○ 사업관계자

1대 0.3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있는 모반에서 상당히 이거는 삽도 형식으로 1대1 스케일은 아니고요. 삽도 형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려진 거고. 실제 높이는 한 15m 정도 비탈면이, 구조물이 10m라 높이로 봤을 때 5m 정도 더 올라가는.

○ 000 위원

문화재, 경관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훼손도 되고 너무 가깝기도 하고, 조금 question일 것 같기는 한데.

○ 사업관계자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면 토사로 덮어버립니다.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곳은 앞면으로 보는 정면에 40m 너비 정도면 구조물은 2층 건물이 보이지만 위, 상부, 좌우 다 자연토사로 덮어버리고 조경계획을 저희가 소나무 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조경으로 다 덮을 계획입니다.

○ 000 위원

그래도 한 10m이상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 시각에서 보면 저기가 한 10m가 다 오픈이 되어 있어야지 방재구난지역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하튼 필로티에다 10m이상 건물을 잇는 거잖아요. 그렇죠?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그거는 열려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 사업관계자

그런데 철도시설이다 보니까 전부 다 울타리로 쳐서 사람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사람들은 드나들 수 없고 인도에서 볼 때는 아마 울타리 옆으로 보이는 건물.

○ 000 위원

저거를 환기 시설하니까 무슨 갤러리처럼 해서 그런 건물이 가는 거죠? 그렇죠?

○ 사업관계자

2층에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환풍 시설 같은 게 들어가고. 구조물 자체의 역할이 사실은 노선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피목적과 평상시 환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할 수는 없는데 당초에 비오톱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비오톱으로 위치를 옮기다 보니까 저쪽으로 간 것이거든요.

○ 000 위원

비오톱 구간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데요?

○ 사업관계자

당초는 이 자리였고요. 허용기준상에 관련법 지역을 찾아서 자리 잡은 게 이 자리입니다.

○ 사업관계자2

공사시에도 비오톱이 안 걸리고 완공후에도 안 걸리는.

○ 000 위원

저 모퉁이에 무슨 건물들이 기존에 있지 않나요?

○ 사업관계자

네, 있습니다.

- 000 위원
그건 다 매수해서 털고 그 위에다가.
- 사업관계자
네, 굉장히 노후된 건물들.
- 000 위원
현재의 지반 지형하고 얼마나 변형이 돼요?
- 000 위원
실제 비오톱은 면적도 넓고 저거는 실제 문화재보다도 훨씬 그거 한 건데
그거는 다 피하고.
- 000 위원
비오톱을 피해서 문화재로 왔다는 게 설득이 안 돼서 그래요.
- 000 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 000 위원
지금 저 상황에서 구간이 지나가는 선위치 좀 그어보세요.
너무 가까워.
- 사업관계자
위치를 변경을 했는데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게 계획을 다 해
놨고요.
- 000 위원
이거는 좀 곤란해, 안 되겠어.
- 000 위원
바로 담장 옆이잖아요.

○ 000 위원

실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비오톱이 중요해, 문화재가 중요해?

○ 000 위원

이 분들한테 그렇게...

○ 000 위원

객관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 사업관계자

예, 맞습니다. 문화재의 배경. 지금 보시면 위에 올라가서 보통 보거든요. 석파정 별당을 아니면 이 도로변에서 바라보는 데, 바라볼 때 이쪽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굉장히 저희도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관련법 지역 3구역으로 잡은 거거든요.

○ 000 위원

3구역이든 4구역이든 경관상으로 그래도 그게 실제 거리가 얼마 떨어졌어요, 직선거리가.

○ 사업관계자

이게 10m씩 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18m 떨어집니다. 그리고 문화재로부터는 약.

○ 000 위원

보호구역을 따져야지, 보호구역 경계에서.

○ 000 위원

3구역의 조건이 뭐죠?

○ 사업관계자

3구역이 관련법 지역입니다.

- 000 위원
관련법, 적용지역.
- 000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는 안강만 설명하셨잖아요. 안강으로 설명하실 때야 당연히 낮으니까 괜찮은데 넓게 경관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많은 훼손이 있어서, 참.
- 사업관계자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행법령에서 관련법령에서 7.5m 높이에서 안강 27도 보고 있는 구역으로 이걸 설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찾다 찾다가, 설계사 입장에서는 여기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져오신 거예요.
- 000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강만 보시면 그런데 문화재 경관이라는 측면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 000 위원
경관과, 환풍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지하에 약취라든지.
- 000 위원
그렇지, 밑에서 그게 다 나오지.
- 000 위원
그다음에 비상시에 저 터널로 사람들이 다 빠져 나와야 되는 거죠.
- 000 위원
그러는데 좀 아주 한심한 게 비오톱은 다 피하고, 피하고 해가 하필 문화재는 우습게 본 거 아니냐는 소리지. 말이 되는 소리냐고.
- 000 위원
만약에 저기는 아니 되오, 그러면 다른데 찾아야 되는 거죠?

○ 000 위원

다른데 찾는 거죠.

○ 사업관계자

저희가 지금 공문을 올렸는데, 2018년 11월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때 왔던 것들이 이런 (안)이 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를 통과하는데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 000 위원

이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진행을 해야 되는...

○ 사업관계자

6월에는 착공을 하겠다는 경관심의도 들어갈 계획이 있고요.

○ 000 위원

6월이 법의 묶여있는 시한인가요, 아니면.

○ 000 위원

건설부 개인이죠.

○ 000 위원

너무 가깝고 구조물 자체가 너무 커요. 석파정이 조그마한데다가, 석파정이 아주 왜소하게 보인다는 거죠.

○ 000 위원

저희끼리 논의하죠.

그때는 누가 답을 한 거야? 저 사람들 주장은 예전에 물어봤는데 왜 가만히 있다 지금 그러냐.

○ 000 위원

비오톱 담당하는 과에서 했겠죠.

○ 000 위원장

이거 검토를, 설명을 듣고 파악을 다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 000 위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것을 예습도 없이 와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덟 군데나 되는 것을 다 보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조금 종합적으로 거르는 기구라고 그럴까 모임을 만들어서 입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을 두고.

○ 000 위원

000 교수님만 이해하신 것 같은데.

○ 000 위원

스위스랑 이태리 알프스도 한 53km인가 가트라고 하는 것도 뚫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긴데, 이제 그거는 우리같이 도심지가 아니라 큰 문제가 없는데. 재산권도 사실상 애매하니까 그거는 아마 유보시키고 특히 문제가 좀 되지만 해결만 하면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문화재는 주로 밑으로 가더라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큰 리소스인데 제일 먼저 점유한다기보다도 사용하면 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공학적으로는 러프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면서 또 문제생기면 해결하는 그런 돌파 식으로 하는데 이게 뭐 전례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땅 밑에다가 도심지 지나가면서.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영동에 터널공사라든가 강남 서울대 근처해서 나름대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간단하게 대면 부등침하나 아니면 가속도, 속도 그런 것만 갖고 체크를 하는데. 지금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경암이고 해서 진동이 있으면 감세가 됩니다. 이렇게 쪽.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저기 체크를 하면 좋은데, 크로스체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기술자가 어떤 의견도 내야 하는데, 그냥 이거는 에스지레일 주식회사에서만 해왔기 때문에 내부를 뭘 집어넣는지 뭘 했는지 가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그래서 문

화재로 봤을 때는 아까 석파정 별당인가 그런 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지금 40m, 100m 그렇게 있는 데서는 실제 하는 건 몰라요.

○ 000 위원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지하배수로 거기가 안에 마감이 조적으로 돼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가깝던데, 깊이가. 지속적으로 진동이 왔을 때 괜찮아요?

○ 000 위원

그러니까 패드를 대야 해요. 독일 같은 데는 방진시스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도심지기 때문에 흔히 싱크홀 같은 거. 왜냐하면 물이 빠지면서 연약지반이나.

○ 000 위원

그래서 아까 계속 지하수 얘기를 하던데.

○ 000 위원

지하수 처리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거 하고 나면 다른 우리가 생각했던 도심지, 아까 얘기했던 싱크홀 문제는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책 없이.

○ 000 위원

문화재가 상부에 있는 거는 저쪽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대처가 될 것 같은데 지하배수로 거기는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좀 가까웠고 제 머릿속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진동이 왔을 때 이게 대처가 될까?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있었어요.

○ 000 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서울은 송례문도 있고 흥인지문도 그때 당시에든 수준이 그때는 이 정도는 안 되는 데도 해버려서, 지속적으로는 문제는 있죠. 기왓장이 떨어진다든지 위에 양성이라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깊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 000 위원

다른 건 걱정스럽지 않은데 석파정 경관적 측면과, 지하수로 거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감당이 될까 그래서 두 군데가 저는 우려스러웠어요.

○ 000 위원

써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000 교수님 하신 말씀.

○ 000 위원

그런 부분들은 더 주위를 기울여주든지 가능한 한 지하배수로나 지하에 있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웠어요.

○ 000 위원

뚫으면서 락볼트로 하고 안에 차벽을 해요, 스프레이 같은 것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돔, 쉘구조, 아치처럼 되니까 밑에 압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큰 저기는 없는데 공사나 또 다른 수맥 같은 변화를 줘서 생기는 문제가 되겠죠. 공사하고 나서 2~3년, 적어도 10년 정도는 계속 나타날지 모르겠죠. 그런데 아까운 것은 이것도 자원인데 밑에 뽕뽕 뚫어서 쓰는 거죠, 재산권 문제가 아직은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이거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보고. 할 필요성이 있겠죠?

○ 000 위원

6월 달에 개착한다고요?

○ 000 주무관

6월 달에 착공예정이라고 합니다.

○ 000 위원

그런데 본다고 그랬을 때 무엇을 더 볼 건지...

○ 000 위원

환기구, 이거는 좀 다른 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공원과 같은 경우에도 자연경관 뭐 공원도 안 된다. 비오뜰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밀리고 밀려서 여기로 온 거거든요. 자기들 대안 2를 여기다 해 놓은 거라고 이름도 뭘지 모르겠는데. 대안 2가 지금 석파정 옆에 해 놓은 거예요. 이걸. 서울시 의견을 따라서...

○ 000 위원

저는 나머지는 기술적인 상황이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뭐라고 대항할 얘기는 없고 방재구난지역은 문화재의 영향, 문화재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데를 찾아볼 수 없는지.

○ 000 위원

여기 뭐 발파진동, 발파소음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numeric하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한다고 개축 뭐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철저한 거를 계속 어느 단체에서 감시하는 수밖에 없죠. 동대문도 그 앞에 호텔 지었잖아요. 멋있는 호텔, 그거 할 때도 한 30m돼서 그때도 계속 문화재청이랑 근처에 있는 상인들 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었죠.

○ 000 위원

아까 모니터링 한다고 그랬을 때 모니터링 결과치를 여기다 알려줄 수는 없나요? 그냥 자, 모니터링을 한다. 그다음에...

○ 000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 모니터링에 대한 감시와 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와야 돼요.

○ 000 위원

모니터링을 한대라고 끝인데, 그럼 누가 그것을 볼 것이냐는 것이 없었어요. 모니터링을 할 거면 데이터 값이나 이런 것들을.

○ 000 위원

아까도 계속 물어봤는데 여기 있는 흠 같은 것 바깥으로 빼야 하고 이거 들어가려면 시발점부터 넣지 않을 거 아니야, 중간에 어디다 넣어 넣느냐, 그런데 그 얘기는 아까 역에다 둔다고 하는데 그거 조금 파서 되나요? 엄청나게 개착 범위가 넓은 텐데, 그런데 그 공사할 때도 내가 보면 우리 당해 문화재 같은 데 어딘지 그 영향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 000 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집에 가서 볼 기회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몇 분해서 한 달 후에 회의 할 때 하는 걸로 보류해놓고 의견을 좀 모아서 합시다. 오늘 당장 하기는 다 자세하...

○ 000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봐서는 문화재하고의 관계라든가 이게.

예를 들면 아까 석파정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렇게 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를 모른다는 거죠. 다른 거는 지하 몇 십 m 들어간다 하면 들어가나 보다 하는데 석파정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파악이 잘 안 되니까. 그 보완을 각 문화재별로 진동이 0점 얼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 000 위원

진동이 OK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목조가 OK라는 기준은 없어요, 아예. 목조자체의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못하겠는 거야, 우리나라에 기준이 없으니까 OK라니까 OK인데 목조는 없어, 아예 기준에.

○ 000 위원

그거를 줄 수가 없죠.

○ 000 위원

예, 그러니까. 목조는 사실은 이런 진동에 상당히 취약한데 그거를 가지고

목조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옆집다는 얘기라서 말을 못 하겠는 거야.

○ 000 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000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세 분정도 한 달 숙제를 좀 해서 보류를 하고 다음 달에 그렇게 하시죠.

○ 000 위원

예, 그러시죠. 뭐. 제가 더 필요한 거라든가 추후 어떤 게 필요하든지 리스톱을 해서.

○ 000 위원장

000 교수님.

○ 000 위원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와의 관계는 생각을 안 해도 되나요? 국가지정문화재 거기 심의통과시점이 있을 텐데.

○ 000 위원

그때도 애매했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다 공학적인 백그라운드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짚는 것은 그냥 대략적인 수준이라.

○ 000 팀장

회의자료 16페이지 보시면 문화재청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 000 위원

자기들이 이거 다 보완했다는 거 아니야, 그 소리 아니에요?

○ 000 팀장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사적분과에서 온 거네.

○ 000 위원

문화재청은 아니고 우리는 한양도성이니까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재청 말씀드린 겁니다.

○ 000 주무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서. 시행이 보존정책과 209번으로 나갔거든요.

○ 000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국가지정 문화재가 많이 걸려있는데 그 중에 한양도성에 대한 것만 한양도성에서 검토를 해 온 거예요. 제가 한양도성위원이라 알아요. 여기는 딱 한양도성만 봐요, 다른 데 안 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것과 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 000 위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문화재위원회에서 파주에 있는 고려시대 석불 있지 않아요? 그 용미리 석불인가. 그 근처에 석산이 있어요. 삼표 레미콘회사에서. 그래서 석산이라는 게 우리나라 골제가 귀하니까 그게 사실 자원이기 때문에 그걸 깨서 하다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결국에 보면 지금 구역에 들어와서 그거 그때 문제가 됐었어요.

○ 000 위원

그때 머리 띠 두르고 거기 난리 났었죠.

○ 000 위원

레미콘 하시는 분은 떴고 그다음에 신자부터. 그런데 파주 군수랑 문제도 있지만 그때 위원회에서는. 이것도 내가 보면 그것보다 더 가까워요.

○ 000 위원

그때 100m였어요.

○ 000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가까운데, 그러면 알고 나면 그런 거 안 해주면 또 문제

가 돼. 형평성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는 이거 이후에 파급효과가 클 수가 있다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땅 밑이고 하나는 지표면 위에 있는 거라 문제가 되지만 진동은 땅 통에서 오는 거라 발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나는 그런 여타문제들이 걸려있어서 다음에는 속절없이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위험해요 여러 가지로.

○ 000 위원

그때도 무진동 발파라서 무진동 발파라는 게 있냐. 그랬더니 진동이 작다. 진동이 작은 것은 무진동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때보다 하여튼 프레젠테이션은 깨끗이 해왔는데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잠복해있습니다. 앞으로.

○ 000 위원

그때는 100m였는데 지금은 40m 짜리도 있고 그때보다도 가깝기는 해요.

○ 000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옛날 것 찾아보면 이거는 형평성도 없고 그다음에 추후 문화재위원이라든가 유사 비슷한 문제들은 완전히 건너가기 쉽지 않죠.

○ 000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000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관심 있는 분들 몇 분이 스터디를 하시고 거기에서 이슈라든지. 해결점들. 또는 문제제기해야 될 것들을 추출을 해주시고 우리 시문화재 팀에서는 문화재청에다가 지도도를 놓고, 이 선상에 문화재가 걸리는데 국가지정도 있고 시지정도 있고 경기도 지정도 걸린다고.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그래서 문화재들을 놓고 밑에 땅 파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기준 마련하고 현상변경에 대한 것을 마련하고 하는 것을 그런 종합적이고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한번 던져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 000 위원

한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 000 위원

문화지킴이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 번 이슈화시켜서 한 다음에 할 필요가 있어요.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후대에 대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무솔리니가 콜로세움 하는 것이랑 다름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한 다음에 하거나 이슈화 돼서 고시되어 있는 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도 책임 안 진 상태에서 덜커덕 몇 분 사이에 일어난 것가지고 현상변경 해줬다고 하면 그 시대 기성세대 갖고 있는 사람 모두 책임이죠, 사실 이게 땅 속이라 모른다고 하지만 아무도 모르니까. 그 생각이 자꾸 들어서 굉장히 짹짹해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슈화가 하나도 안 돼. 땅값이 다 오르니까 다 국민들이 부패해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 000 위원

성곽은 성곽대로 봤을 거고, 송례문은 건축에서 볼 거고. 물론 사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서울역이 걸리면 서울역은 근대 사적이어서 근대 분과로, 또 매장 들어가면 매장. 문화재청 안에서도 조각조각 볼 거라고 그거를 문화재청도 종합적으로. 서울시도 종합적으로, 또 경기도도 종합적으로 해서 이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의체 구성해서 입체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수밖에.

○ 000 위원

예제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개운치가 않습니다. 다음 문제가.

○ 000 위원

000 위원님께서서는 환기구 새로 찾아오라고 하시고 그래서 부결시켜버렸으면 좋겠다고 지금, 신경 안 쓰고 싶다고 말씀하시네요.

○ 000 위원

부결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 000 위원

이거요? 아이고 그러면 000 장관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게 지금 한국 경제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세대...

○ 000 위원

환기구, 자기들 대안을 찾아서 다른 데라도 하든지.

○ 000 위원장

그런데 부결하기에는.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부결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거는 개선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파약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몇 분 희망자.

○ 000 위원

일단 대표라고 하시고 나중에 하시죠.

○ 000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사업관계자

지루하실 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목적은 사실 3·1운동에 있어서 승동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승동교회를 어떻게 보전정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잡는 것으로 사실 용역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인사동 지역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승동교회에서 옛유적 지역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승동교회 복원방안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잡혀있고요.

세부용역 내용으로는 역사분야, 건축분야, 관광활성화 분야라서 일반적인 정비계획 내용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동교회라는 곳 자체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잡혀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승동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앞서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지는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만 고민할게 아니라 사실 교회 쪽에 계신 분들하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계신 분들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승동교회를 계속 미래에도 전승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승동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비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가지 정도에 계획에서 큰 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승동교회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본당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사와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역사적 장소다라는 정체성을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승동교회 기본정비계획은 관련법규와 지침에 따라 수립을 하며 부지와 관련된 여타 계획과 연계해서 실제 진행이 가능하도록 수립한다였습니다.

이 부분 대해서 교회 쪽에서 조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과 연관이 좀 있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였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저희도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125년이라는 역사를 승동교회가 갖고 있는데 이 125년간 신앙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승동교회가 한국 기독교역사 사적 지으로써 전승될 수 있도록 정비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재로 지정된 본당은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무부별하게 과잉복원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순서로 잡으면 본 계획은 본당의 역사적 가치 보존을 주요과제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승동교회를 효율적으로 역사성을 전승할 수 있도록 제반필요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여러 차례 중간보고와 최종보고가 있었는데 그거는 발표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동교회는 1893년도에 사무엘 무어라는 목사님께서 설립을 하였고요. 지금 있는 인사동으로 온 것은 1904년입니다. 1904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을 했고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본당에 원 신축했던 것은 1910년에 착공을 해서 12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그리고 1919년도에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되는 게 3·1운동 당시에 김원벽 지사를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의 1차 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장소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면서 동시에 당시에 담임목사였던 차상진 목사가 12인 등의 장서라는 것을 총독부에 제출을 하면서 그 두 분이 동시에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 역사적인 독립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승동교회 본당에 모습, 지금 있는 모습은 1958년도에 한번 증축을 했는데 그때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69년, 70년에 한 번 더 증축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2005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2008년도에 그거에 따른 보수 공사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3·1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시는 김원벽 지사님과 차상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승동교회의 장소성에 대한 얘기, 특히 3·1운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가기록원을 좀 뒤져서 그분들의 대부분 판결기록까지 찾아서 저희가 보고사안이 그분들이 어떠한 역사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당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번 해봤습니다. 본당이라고 하면 사실 현재 남아있는 그것과 최초 12년도에 준공되었던 당시의 모습에 약간 변동이 있어서 저희가 변동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4가지의 문화층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1기라고 잡고 신축했던 1912년도에 그 모습이었고, 2기는 1958년에 증축했던 그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3기는 69년과 70년 사이에 일부분 증축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3기로 잡았고요. 4기는 2005년도 안전진단을 통해서 2008년부터 구조복원을 했던 시기, 그리고 2009년에 중국 사천성에서 벽돌 수입을 해 와서 앞에 계단실 부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딱 현재 보이고 있는 승동교회 모습이 있는 시기를 현재까지로 해서 4기로 잡았습니다.

1기의 모습은 12년도 당시 준공예배를 드렸던 1913년 사진이 남아있고 그리고 교회자료에서는 사실 여기 곽안련 목사라는 분께서 여기 설계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뒤지다보니까 새문안교회를 설계를 했던 헨리 고든 분께서 세브란스도 설계를 하셨죠. 이분께서 승동교회도 똑같이 설계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있던 입면에 모습하고 그다음에 배면 북측 면에 해당하는 배면 쪽에 정면 파사드하고 대칭되는 구조에 요소들이 남아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준으로 했고 나중에 말씀드릴 58년도에 결정적인 자료가 확인이 돼서 저희가 복원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1913년 준공했을 때 예배를 했을 때 당시에 모습이고 정면 파사드에서 남녀출입구를 따로 둔 밑면이 돼 있고요. 측면으로는 4개 월형 창과 위층으로 되어 있는 2층에 법당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1958년 증축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승동교회 역사관 안에 동

산문화재, 사실 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한 채 엄밀히 말하면 방치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동산문화재에 대한 문화적 가치 검토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가 1958년 건축허가서라는 문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쪽에서도 모르고 계시다가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하고 문서내용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하면서 봤더니 58년 8월 달에 서울시에 증축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리고 그거를 서울시장이 허가하는 문서인데 첨부문서 안에 공사 시방서와 도면까지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게 평면도로 해서 파란색이 1913년 있었던 원래 구조고 빨간색이 증축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평면까지도 복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조벽하고 입면까지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년도에 트러스 같은 경우도 이 도면을 근간으로 해서 복원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1958년도 증축된 부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증축된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도면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렸습니다. 1970년대에는 지금 본당 뒤쪽에 파이프관이 새로 69년도에 들어오는데 그 공간을 수용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북측 벽을 증축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앞에 계단실이 원래 3층이었던 게 4층까지 올라가는 그 당시에 모습입니다. 4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을 2005년에 해서 구조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나와서 보수를 했는데 기존 목조트러스 부분을 아래에 철골로 보강을 하는 공사가 2008~2009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공사를 했던 시점을 맞추고 2009년 중국에서 벽돌을 가져와서 마감했던 그 시점까지를 저희가 4기로 잡아서 사실 지금 보시는 도면이 현재 승동교회에 현황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쌓기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육안 조사를 하면서 조금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증축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쌓기 방식이 좀 달랐거나 아니면 벽돌을 다른 것을 썼지 않았을까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일단 중국에서 가져온 벽돌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원 벽돌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축했던 부분도 원래 기존에 쌓았던 방식대로 그냥 다시 쌓았던 그 방식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승동교회 본당 중심으로 해서 승동교회 전체 배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희가 지적도 하고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원래 강점기 때 처음 승동교회였을 때 1912년 지적도에는 137번지가 현재 승동교회가 있는 곳인데 그 정도 137번지만 있었고요. 58년도까지만 해도 137번지에서 크게 배치구조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다만 1997년도에

밑에 있는 120번지 일대를 병합을 하고 수용을 하면서 아래쪽에 사무실이 나 그런 기타 숙소 식당 등을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78년이 되면 일부 한 옥들을 헐고 주차장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현재까지 지어져 있고요. 토지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37번지 있던 게 122번지가 지금 78년도에 병합이 되고요, 현재 138 지번이 통합되는 것은 1996년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서울시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이 있을 때 원래는 본당에서만 보호구역으로 잡혀 있던 것들이 이 주변으로 보호구역이 확장 되는 식으로 보호구역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닥 면적표하고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것들이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체계획에서 기본 틀을 짤 때 양성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잡았고요. 이거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본당 교회 원체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기는 하지만 주로 오시는 데는 동쪽에 있는 출입구가 전부입니다. 차도 이쪽밖에 진입을 못하고 걸어오시는 곳도 이쪽이고 나머지 출입구들은 거의 쪽문에 가까운 시설에 가깝고요. 본관 1층은 기도실하고 역사관에 있습니다. 역사관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나머지는 전도회실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2층 이상부터는 예배실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서관이라는 곳이 예전에는 목사님 사택이었다가 지금은 성가대 하고 전도회에서 쓰고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봉사관이라고 해서 사무실 하고 담임 목사실 그다음에 아래쪽 봉사관은 식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전도회관이 있습니다. 기타 옆쪽으로 경비실하고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사택 등이 있습니다. 시설물들은 다음과 같고요.

기타 지금 저희가 주변을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겠다고 저희가 포커스를 잡았던 것들이 북측에 있는 담장 부분, 그다음에 승동교회 바로 서쪽에 있는 석축부분, 그다음에 여기 있는 진입로 부분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출입구 자체가 복잡 혼용 되면 안전사고 위험은, 특히 주일 예배하실 때쯤 되면 차가 댈 데가 없어서 너무 혼잡이 되고, 북측 담장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는 교회 쪽에서 정비를 하셨는데 바깥쪽은 계속 방치된 상태여서 약간 기울어져있는 상태입니다.

본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 현황 육안조사를 하면서 훼손도 그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관리는 비교적 잘 되어있는 상태여서 균열이나 탈락, 파손, 변색 지류에 대한 %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측면 쪽에 있는 곳하고 배면 쪽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균열부가 조금 많이 확인이 되

고 서측하고 특히 동측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열이 저희가 맨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보다 최종 보고할 때 보니 균열이 진행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건축문화재에 대한 안전진단 뭐 규정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고 그래서 맨 처음 조사할 때는 C등급 정도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균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점수가 더 깎여서 이제는 D등급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동산문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리스트로 했던 36건 총 48점에 있는 목록 말고도 엄청 많은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단 하나, 하나 뒤져봐서 그래도 이거는 되겠다 싶은 문화재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기록물들만 저희가 따로 지금 정리를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있어서 동산문화재에 대한 지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1906년 성경이나 1911년판에 있는 전서들 같은 경우는 이미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동일판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1958년 건축허가서 같은 경우는 승동교회 정체성이나 그 역사적 고증을 할 수 있는 1차 사료로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좀 빨리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외 내에 있던 식생조사도 저희가 같이 했는데요, 사실 나머지 것들은 조경수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본당 앞에 있는 느티나무 같은 경우 수간 폭이 넓은 걸로 봐서 뿌리자체도 밑에 본당까지 뿌리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둥 주변 쪽으로 해서 본당 쪽으로 균열이 시작이 되고 있어서 이 식생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은 그렇습니다만 느티나무에 대해서는 나무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이 올라가지 못할 정도의 이상적인 슬로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용객은 지금 저희가 조사 처음에 했을 때만 해도 담임목사님 안 계셨어요. 안 계셔서 신도수가 줄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천 분 정도의 신도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도 분들의 공간을 분석한 결과 사실 신도 분들께서 특히 주일에 오실 때 멀리 계신 분들이 많아서 9시 예배부터 오후 3시 예배까지 계속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계시는 공간이 넉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정문화

재들이 워낙 인사동에는 많으니까 아시겠지만 여기는 역사도심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체가 다 매장문화재 필요지역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기본 내에서 인사동 돈화문로에서 승동교회 일대는 한옥밀집지역으로 잡혀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봤던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3·1운동 대표가로 조성사업에 대한 것들을 봤는데 이 사업 내에 중기계획안에서 이 승동교회에 대한 내용이 이미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1운동과 관련해서 승동교회가 주요거점으로도 이 계획에 잡혀있기 때문에 승동교회 정비계획은 해당되는 3·1운동 대표가로의 기본계획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동교회 쪽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은 공평15, 16지구 도시계획입니다. 이것들은 아마 다음달 22일 정도에 서울시 도시계획과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승동교회 밑에 쪽 땅이 반 잘려나가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생기고요. 그래서 여기가 본당이 있는 곳인데 지금 사실 밑에 있는 주차장 일대와 밑에 사택정도까지는 다 넘어가서 승동교회 땅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는 상황입니다.

관련법규도 그 도시계획에 따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전제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본당이라는 역사적 건축물을 어떻게 관리할거냐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예배활동을 하고 있는 본당에서의 정기적 고유가치를 어떻게 전승할 것이냐에 대한 것으로 잡았고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잡혀있는 곳을 문화유산 영역으로 잡고 도시계획으로 잘리기는 하지만 바깥쪽을 교회 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서비스영역으로 잡아서 원칙적으로는 보호구역은 사실 원칙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는 조금 소극적으로 하되 공개할 수 있는 상시 공개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전승할 수 있고 관광으로도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겠지만 서비스영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공간이 되면서 그래도 전도나 교육, 교구 네트워크에 치중을 하는 영역별로 성격을 잡았습니다.

일단 문화유산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았던 것, 첫 번째는 문화유산영역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하는 의미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3·1운동 관련돼 있는 조성계획과 연계한 것들을 했을 때 사실 승동교

회 바로 앞에 있는 2층짜리 한옥집을, 이 집에 대해서 혹시 가능 하다면 승동교회 계획안을 포함한 안 되겠지만 3·1운동과 관련돼 있는 연계된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가능성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고서에는 수록을 했고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걸로는 이 주택이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고 미래자산 건축조사했을 때는 이 집은 이미 조사가 되어 있어서 목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재 지정가치 일단 20세기 2층 도시형 한옥구조로써는 굉장히 잘 구조가 보존되어있는 상태라서 문화재 지정가치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본당에 대해서는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정비기준시점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정리했던 4개의 문화층을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조금 설정을 해봤습니다.

설정을 했을 때 크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는 현재에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과도한 보호는 지양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중첩되어 있는 레이어들이 전체가 다 누구라도 교육적인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 북측 벽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고증할 수 있는 정확한 1차 사료가 있어야 되는 걸로 잡았을 때 저희는 이거에 해당하는 1958년 정도가 정비시점에 기준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사실 복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비시점에 맞는 정비에 대한 내용인데 복원으로 하면서 북측 벽에 증축부, 파이프 오르간 때문에 증축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회 측과 오래 얘기를 했던 게 혹시 여기 부분을 철거할 수 있겠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북측 벽을 철거해서 원형대로 복원이 가능하다면 1912년 원래 파사드하고 대칭되는 뒤에 똑같은 원형의 모습이 이미 북측 벽이 있었고 그게 아직 흔적도 남아있고 그렇게 되면 그 쪽을 복원하게 되면 1912년부터 1958년, 70년, 2008년 이후에 4개의 문화층이 승동교회 입면 전체에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중첩적인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잡았고 두 번째는 북측 벽에 이미 원형창 밑으로 크랙이 많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보수를 해야 하는데 보수하는 차원에서 복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금 계

획을 잡았습니다. 보수 같은 경우에는 북측 벽에 대한 얘기는 말씀드렸듯이 복원하면서 같이 보수를 해야겠지만 서측, 동측하고 서측, 북측 벽 모서리 쪽에 있는 이 균열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고 69년에 여기 부분을 증축을 하면서 파이프 오르간 장소 때문에 여기는 창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막은 것까지도 복원의 개념으로 다시 오픈하는 걸로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원이나 보수의 개념으로 일단 내용을 잡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잡았더니 이게 어마 무시한 예산이 도출이 되고 그다음에 한쪽에만 국한되어있는 정비내용이 잡혀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좀 더 큰 틀에서 그리고 효율성 있는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2005년 이후로 사실 여기 정밀안전진단이 한 번도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당장이라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아예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아치에 대한 문제나 지금 새로 보강되어 있는 H빔에 대한 문제 위에 트러스 부분에 대한 문제 기타 등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복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 지에 대한 내용을 아예 해놓고 나서 북측이나 차측 벽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마지막으로 사실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당에서 여기는 주일에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관조차도 일요일만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공개원칙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기본적으로 역사관의 규모도 굉장히 좁거니와 향후 문화재 지정될 수 있는 동산문화재들이 많으면 이곳은 사실 박물관을 조금 새롭게 정비를 해서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건의를 드렸던 것은 박물관 미술관법에 있는 이중 박물관 수준이라도 본당1층 역사관정도 있는 곳에 다 그것들을 정비를 하면 어떻겠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기도실이 있고 전도실로 쓰고 있는 공간 아래쪽에다가 **전시실을 확인실을 놓는 섹터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자문 받고 있던 도중에 원래 1912년에 지어졌던 것들이 원래 중앙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통로에 대한 역사성 복원 차원에서 다른 안도 낼 수 있겠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중앙통로를 복원하면서 여기 있는 기타 전시실 박물관공간하고 기타 교회에서 쓰시는 공간을 나눴는데 다만 원래 있는 벽체 같은 경우가 540mm 정도가 되는데 원래 붙어있던 구조벽이라서 이

부분을 만약에 해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정밀안전을 했을 때 현황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달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서쪽 석축과 북측에 담장, 주변 정비로 저희가 잡았고 진입부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 때문에 비이상적인 슬로프가 잡혀있는 램프 부분을 사실 현실적으로 그리고 특히 80세 이상 되신 할머니 신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교회라서 그분들이 편하게 왕래하실 수 있게끔 가능한 문화재 훼손이 안 되는 바깥쪽으로 해서 램프하고 장애 인용 엘리베이터까지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도실 같은 경우로 앞으로 서비스 영역으로 옮기면서 이곳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필요하신 공간으로 정비를 하는 것, 그리고 원래 성가대실 자체가 기존에 목사님 사택으로 썼던 기존 한옥시설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구조만 남기고 성가대실로만 유지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아래쪽에 서비스 영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전체 필요한 지역이라서 도시계획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승동교회에서도 철거를 하시고 건물을 새로 짓게 되시면 발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굴조사에 관련돼 있는 절차하고 예산 관련돼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근처에 가장 요새 유명해진 공평 도시 유적전시관과 같은 여기도 아마 인접해있는 되게 중요한 유고가 나온다고 하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지침까지도 보고 사안에 수록을 했습니다.

승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상변경대상도 아니고 재원 자체도 사실 승동교회에서 자부담을 거의 하셔야 되는, 서울시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일단 영역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가설계 비슷하게 한 번 개념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도시계획 하면서 다 잘려나가는 땅에다가 그래도 천여 분의 신도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 정도로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드렸고요.

앞에 건물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다가 궁극적으로는 교회 쪽도 그렇고 자문위원 선생님 의견도 그랬고요. 그래도 본당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본당에 윗면 그것들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시설로 설계하면 어떻겠냐고 얘기가 나와서 상시 사람들이 생활해야 되는 사무실이나 목사실 같은 경우에만 1층으로 두고 나머지 시설들은 다 지하로 내려가는 이런 시설들로 일단 제안은 드

렸습니다.

기타 본관 같은 경우도 사실 서쪽, 동쪽으로 진입하는 공간들 자체에는 저희가 도시계획 끝나고 승동센터가 지어지면서 차량과 보행동선을 분리를 시켜서 혼잡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 보행자 중심 동선으로 잡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단계별로 시행계획을 잡았던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문화유산영역에 대한 본당, 서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와 중기로 나눠서 중기는 5년 뒤에 변경계획 수립하는 것까지 저희가 일단 잡아왔고 지정조사, 동산문화재에 대한 지정조사 하는 부분 여기는 보수에 대한 내용, 안전진단 하는 내용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지에 대한 단계별로 순서를 잡았고요.

서비스영역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심의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장담도 못하지만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는 교회 쪽에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중장기 계획을 짜서 그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일단 저희가 서비스영역 같은 경우는 기준 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면적을 했을 때 단위면적당으로 단위예산만 잡아드린 거고요.

문화유산내역 같은 경우는 수리설계 및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측부 철거하고 측면 보수하는 것만 해도 한 8억 5,000정도 예산이 필요해서요.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보수하고 그럴 것 같기에 아예 그러면 최소한 1억 2,000정도의 안전진단이나 정밀실측을 한 걸 가지고 보수 계획을 짜서 아예 8억 더 들어갈 수도 좀 더 단계별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단계를 좀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음 달에 끝나서 보고서를 열심히 쓰고 있다고 목차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 000 위원

기본정비계획은 왜 하게 된 거예요?

○ 사업관계자

제가 대신 말씀 좀. 종로구청에서 오셔야 하는데.

2017년에 승동교회 주변에 석축, 벽. 서측에 있는 동관에 누가 훔쳐가면서 거기가 물이 들어와서 벽돌이 좀 썩었습니다. 담장 일대가 허물어져서 긴급보수 식으로 2017년에 하셨는데 계속 띵띵 띵 띵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하니까 교회 쪽도 그렇고 종로구청 입장에서도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그냥 드문드문 사업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 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교회 쪽에서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본당 승동교회가 정비를 앞으로 할지에 대한 기준이나 방법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짜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수립하게 됐습니다.

○ 000 위원

용역이 종로구청에서 나간 용역이에요?

○ 사업관계자

종로구청에서 나간 겁니다.

○ 000 위원

아니, 근데 느낌상 북측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한다는 게 그것도 그냥 근대적인 역사인데... 근대는 아니지만.

그거를 철거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고, 중간에 또 뭐하나 지으신다고 했잖아요. 지하에 오픈 컷해서 그게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사업관계자

그거는 사실 저희가 보고서에는 세 가지 (안)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어차피 승동교회 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계랑 시공을 하시는데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시겠지만 지금 필요하신 영역에 대해서 만약에 새로 지으셔야 한다면 이러이러한 방안으로 지을 수 있겠다는 안을 드린 거고요.

기한은 그중에서 수립했던 단계나 교회 쪽과 자문해서 가장 그래도 이상적인 계획인 것 같다라고 나온 의견이라서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 000 위원

그런데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기본정비계획을 왜 하게 됐냐고 여쭙본 것이 뭘 혈고 새로 짓겠다는 게 부각이 돼서, 이거를 왜 해야 출발점이 뭐냐 해서 여쭙보는 거였어요.

○ 사업관계자

아주 간략하게만, 저희는 본당에 사실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 000 위원

비용은 그쪽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 사업관계자

많은데, 저희 보고서에는 비용도 뺐습니다. 아예.

○ 000 위원

아니, 그래도. 비용이 거기 제일 많이 집중이 되는 부분이라서.

○ 사업관계자

제일 많이 집중이 되죠. 그래서 교회 쪽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훨씬 많이 드실 거고. 어느 정도 들 거 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 000 위원

부수고 뭔가를 새로 짓겠다는 게 되게 부각이 돼서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 사업관계자

방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000 위원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나가는 거예요. 종로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 000 위원

그니까, 그랬을 때...

○ 000 위원

000 교수님하고 저하고 000 교수님하고 한두 세 번 현장자문을 드렸는데 처음에 000 위원님하고 또 누구였죠, 매년 어느 주기마다 문화재보호구역 설정하고 하는 그 작업을 2년 전인가 나갔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게 아마 복잡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덜하다던데 옛날에는 종로에서 소

매치기하는 사람들이 지갑 습득해서 빼고 거기가 아주 사각지대여서 한 달에 몇 번씩 보면 지갑이 엄청나게 쌓여있네요. 그런 저런 복잡한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보셨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면서 공평 몇 지구 재개발 사업이 나고 교회시설물 태반이 거기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고.

문화재 쪽만 하자고 하면 계획도로 위에 있는 지금 현재 그것만 다뤄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장기계획을 세우지를 못하니까 보고서 범위 내에 그러면 길 들어가고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영역들이 홀라당 날아가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를 똑같은 볼륨을 놓고 지상에다가 다 올리면 문화재가 가려지고 그러니까 필요한 상주 공간 일주일 내내 사무 보는 공간은 지상에다 놓고 나머지는 일요일에 한 번씩만 쓰는 것은 지하로 넣고 하는데 그 아이디어를 러프하게 짜 드린 거고 그러면 평당 얼마 든다 정도 제시를 해 드린 거니까. 그거는 너무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문화재만 다루는 데 8억 얼마 하고 그것만 좀 드리는 거죠.

○ 000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000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앞부분에 필요성에 관해서 3·1운동 결론은 지금 이용하는데 필요성에 대한 결론이 있으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좀 맞춰주시죠.

저는 그거를 빼달라는 게 아니고 앞부분에 필요성과 뒷부분의 결론이 매칭이 안돼서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달아주시고 같이 결론을 맺어 주시면 어떤가.

○ 사업관계자

3·1운동과 관련해서는 사실 장소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게 좀 빨리 넘어갔습니다만 138-2번지 부분하고 전시관에 있는 전시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를 아예 넣어놨어요. 그것들은 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3·1기념사업과 연결시켜야 하는 부분, 전시관 안에서 전시를 해야 하는 프로그램 중에 김원벽 지사나 차상진 목사님의 1차 사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3·1운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공간 운영계획으로 잡아놓은 상태고 이거는 시설 얘기를 조금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발표할 때 빠진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넣어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 정리를 하실 때 지금 000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왜 뒤에 가서 이거를 하는지 하는 것을 전체적인 안목 속에서 전제를 깔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거를 철거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 앞부분에서 이걸 봤을 때 확 와 닿지 않았어요. 왜 철거를 해야 되는지.

○ 000 위원장

아 그 뒤에? 파이프 오르간? 거기 크랙이 굉장히 심해요.

○ 사업관계자

보수를 좀 하자는 차원인데 보수를 할 때 그러면 증축돼 있는 부분을 파이프 오르간을 둔 상태로 보수를 할 것이냐 했는데 거기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형 균열이기도 해서 보수가 해야겠다. 보수를 할 때 교회 쪽으로 할 때 두 가지 안을 드린 겁니다. 사실 도심기본계획안. 보존에 개념으로 해서 약간의 변동을 주는 것으로 해서 낚을 수가 있는데 사실 북측 벽을 철거를 해서 조금 당기니까 면적은 좀 좁아지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1~4기에 모두 중첩되는 레이어들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다...

○ 000 위원

그러면 파이프 오르간은 옮길 계획안도 주셔야 되는 거...

○ 사업관계자

예, 넣어야 합니다. 넣어야 되고.

○ 000 위원

그러니까 부순다고 해놓고 그 다음 내부공간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 사업관계자

교회 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할 때 파이프 오르간이 굉장히 사실 큰 건

데 그게 2009년도 보강할 때 다시 들여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비싼 거다.

○ 000 위원

그러니까 내용물이 다 바뀌잖아요.

○ 사업관계자

비싼 거다, 조심해줘라.

○ 000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 사업관계자

저희가 만약에 안쪽으로 넣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 000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공간이 어떻게 바뀌는 지를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냥 부순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000 위원장

이거는 심의가 아니고 설명을 듣는 거니까 수고했습니다.

오늘 안건 수는 적은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네요. 그러면 다 끝났죠.

2019년도 제1차 문화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 16시 55분)